

신종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제도 연구

2017. 10

홍범교 · 정경화 · 신영효

목 차

I. 서론	1
II. 우리나라의 담배 과세제도	4
1. 담배의 제세부담금	4
가. 담배 세제의 연혁	4
나. 담배 부담금의 연혁	5
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세	8
라.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	10
마.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11
2.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14
가. 전자담배 유형	14
나. 전자담배 시장 현황	15
다. 전자담배의 규제와 제세부담금	16
3.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입법안	18
III. 외국의 담배 과세제도	25
1. OECD의 담배 관련 소비세	25
2. EU와 WHO의 담배 관련 지침	30
가. EU의 담배 관련 지침	30
나. WHO의 담배 관련 지침	30
3. 주요국의 담배 과세제도	32
가. 일본	32
나. 호주	38
다. 프랑스	39
라. 영국	41
마. 미국	43
바. 이탈리아	48

IV. 주요 쟁점사항별 국제비교	51
1. 담배 과세대상	51
가. 담배의 종류	51
나. 전자담배 정의 규정	51
2. 일반 담배의 과세제도 비교	52
3. 궤련형 전자담배의 과세제도 비교	53
4. 과세방안별 세부담 비교	55
가. 일반담배 세부담 비교	55
나. 궤련형 전자담배 세부담 비교	58
V. 결론	64
1. 담배과세체계 전반	64
2.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	66
참고문헌	70
〈부 록〉	75

표목차

〈표 II-1〉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연혁	7
〈표 II-2〉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의 연혁	6
〈표 II-3〉 담배의 종류와 개별소비세 세율	9
〈표 II-4〉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 세율	11
〈표 II-5〉 우리나라 일반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등의 변화 추이	13
〈표 II-6〉 최근 3년간 담배 수입동향	15
〈표 II-7〉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16
〈표 II-8〉 전자담배 관련 예규판례	17
〈표 II-9〉 최근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관련 법안 개정 및 논의	24
〈표 III-1〉 OECD 국가의 담배 관련 소비세 과세 현황	25
〈표 III-2〉 OECD 국가의 일반담배 가격과 세부담 비중(2015년 기준)	29
〈표 III-3〉 일본의 담뱃세	34
〈표 III-4〉 일본의 일반담배의 세부담	34
〈표 III-5〉 프랑스의 담뱃세(2017년)	40
〈표 III-6〉 영국의 담배에 대한 소비세율	42
〈표 III-7〉 미국 연방정부의 담배에 대한 소비세	44
〈표 III-8〉 미국 주정부의 담배에 대한 소비세	45
〈표 III-9〉 전자담배 관련 주별 소비세	47
〈표 IV-1〉 주요 국가의 담배 과세제도 비교	53
〈표 IV-2〉 주요 국가의 쉐련과 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비교	54
〈표 IV-3〉 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과세방안별로 비교	60
〈표 IV-4〉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시나리오별 세수 변화	63

그림목차

[그림 Ⅲ-1] 일본의 담배 가격별 세금	35
[그림 Ⅲ-2] 일본의 담뱃세 변화 추이	36
[그림 Ⅳ-1] 우리나라 궤련의 제세부담금 변화 추이	55
[그림 Ⅳ-2] 담배 판매가격과 흡연율	57

I. 서론

- 기존의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이후,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가 2017년 6월부터 판매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등의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기존의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액상상태에서 증기화하여 흡인하는 형태인 반면, 2017년 6월부터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새로운 전자담배는 쥘련과 비슷한 담배를 전자기기에서 가열하여 필터를 통해 흡연하는 방식임

- 전자 담배기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인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2007년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었고,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후 판매와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
 -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니코틴 농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고,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향료와 용해제는 별도의 과세기준이 없는 상황임
 - 니코틴 농도를 과다하게 혼합하거나, 고농도 니코틴 액상을 밀수하는 문제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따라서 니코틴 과다 투입 가능성도 있고, 니코틴 부작용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음¹⁾

- 기존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문제점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가 판매됨으로써 담배 과세의 근거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를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2017년 2월에 발

1) 한국소비자원, 「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 2015. 4, p.1

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임시적으로 파이프 담배에 준하여 과세가 되고 있으며, 향후 입법이 정비됨에 따라 변경될 예정임

□ 본 연구는 이러한 쉐련형 전자담배에 적절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안을 찾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우리나라 담배 제세부담금의 부과기준을 검토하고 새로운 형태의 담배 과세에 대한 과세기준을 검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일본, 호주,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담배소비세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담배 과세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함
- 조사대상국 선정은 새로운 형태의 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된 국가 및 시판 예정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음²⁾
- 특히, 새로운 과세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와 세법의 개정 없이 기존의 담배 분류체계로 과세하고 있는 국가 등을 살펴봄

□ 본 보고서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의 연혁과 과세방법 등을 소개하고 제Ⅲ장에서 OECD와 EU, WHO의 담배 과세지침을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일본, 호주, 프랑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의 담배 과세제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음

- 현재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하는 국가와 전자담배 과세규정이 존재하는 국가의 담배 소비세 과세체계를 개괄적으로 소개함
- 제Ⅳ장에서는 각 국가의 담배 과세대상 종류, 전자담배 정의 규정과 담배의 제세부담금 등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모색함
- 다만, 흡연과 건강의 상관관계와 시판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토 등은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고, 소비세 과세대상으로서 담배에 대한 규정을 중점으로 조사·연구하였음

2) 본 보고서에서는 쉐련형 전자담배를 가열식(Heat not Burn; HNB) 전자담배와 혼용하여 작성하였음

-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 제도에 있어 부과기준 및 분류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향후 전자담배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담배 과세제도 정립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Ⅱ. 우리나라의 담배 과세제도

1. 담배의 제세부담금

가. 담배 세제의 연혁

- 우리나라의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1909년 연초세로 최초로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1921년 담배 전매제도가 시행되면서 연초세는 폐지되었음³⁾
 - 전매사업으로부터 획득한 이익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되었고, 담배 전매제도는 1980년 중반까지 유지되었음
 - 1984년 농지세 체계 개편에 따라 농지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서 지방재정 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농지세 감소와 관계없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담배판매세 재원을 배분하였음
 - 1985년부터 전매이익금이 담배판매세(종가세)로 전환되었으며,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 담배양허록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1989년부터 현재와 같은 담배소비세가 도입되었음

- 담배소비세 도입 이후부터 1995년 개정된 담배양허록에 따라 담배에 교육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1996년 7월까지의 담배 관련 소비세는 담배소비세가 유일하였음
 - 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40%에 해당하는 부가세로 도입되었고, 2001년 1월부터는 지방교육세로 전환됨
 - 1989년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담배소비세 도입 이유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재원을 늘리기 위해 담배소비세를 신설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⁴⁾

3) 이하의 내용은 현진권·성명재, 「소비세제도의 변천과정」, 『한국세제사·소비과세·관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12, pp.158~161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하였음

- 담배에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1999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었음
-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추가되었음
 -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흡연을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담배를 추가하게 되었으며⁵⁾,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라 담배를,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은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구분하여 과세함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은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만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는 구조임
 - 따라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규정은 2010년 12월 27일 신설되어, 2011년 1월 1일 최초로 전자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음
 - 2017년 1월 1일 시행법령 개정으로 니코틴 용액이 아닌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였음

나. 담배 부담금의 연혁

-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997년부터 1갑에 2원씩 부과되었으며, 2002년 2월에는 150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음
 - 국민건강과 의료비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2004년 12월 30일부터 종전의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됨⁶⁾

4) 법제처,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jsp?mpbLegPstSeq=127940>, (접속일: 2017.6.15.)

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별소비세법」 조문별(제1조) 연혁 설명 참조,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접속일: 2017.6.15.)

- 담배가격이 2005년 이후로 동결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담배의 실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음
 - 담배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담배가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쉼련의 경우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인상하고, 그 밖의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쉼련과 같은 비율로 인상함으로써 담배의 소비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함⁷⁾
 - 쉼련담배의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용액 1ml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1년부터 부과하기로 함
 -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연초 고품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되고 있으나, 부담금 부과규정이 없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2017년 4월 1일부터 연초 고품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함⁸⁾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전액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기금의 사용 등은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등에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9년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의 50% 이상이 건강보험료 지원에 사용되고 있음⁹⁾

6) 국세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조문별(제23조) 연혁 설명 참조,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접속일 2017.6.15.)

7) 국세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조문별(제23조) 연혁 설명 참조,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접속일 2017.6.15.)

8) 국세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조문별(제23조) 연혁 설명 참조,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접속일 2017.6.15.)

9) 최성은,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p.13

〈표 II-1〉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연혁

연도	건강증진부담금
1997	궐련 1갑당 2원
2002	궐련 1갑당 2원→150원
2004	궐련 1갑당 150원→354원
2011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당 221원 부과
2015	궐련 1갑당 354원→841원
2017	전자담배: 연초고형물 1g당 73원

출처: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및 보건복지부,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안내」 (2012), p.12

- 폐기물부담금은 1996년 7월부터 도입되었으며, 1갑당 4원의 세율로 담배에 부과하였고, 2004년 12월에 1갑당 7원으로 인상되었음
 -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됨에 따라 환경부도 폐기물부담금을 1갑당 7원에서 24.4원으로 3.5배 인상함

-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담금은 2002년 1월에 1갑당 10원씩 부과되었고, 2005년 1월에 15원으로 인상되었음

〈표 II-2〉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의 연혁

연도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내용
1909	연초세	· 최초의 담배 관련 소비세
1921	전매이익금	· 담배전매제 실시로 연초세 폐지 · 전매이익금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전입
1985	담배판매세	· 1984년 농지세 개편에 따라 지방세 감소 우려로 1985년부터 전매이익금이 담배판매세로 전환
1988	담배소비세	· 한·미 담배양허록: 담배판매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담배 소비세 일원화 · 1989년 담배소비세가 도입
1996	교육세(2001년은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액의 40% 세율 · 2001년 지방교육세로 전환, 50%세율 적용
1996	폐기물부담금	· 담배 1갑당 4원/2005년 7원
1997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담배 1갑당 2원 · 2002년 150원, 2005년 354원, 2015년 841원
1999	부가가치세 부과	· 1995년 한미통상협상: 담배시장 개방과 함께 세제개편 자율권 회복

연도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내용
2002	연초생산안정화기금부담금	· 담배 1갑당 10원/2005년 15원
2011	담배소비세-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 과세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신설
2014	담배소비세-세율조정	· 제2종 파이프담배: 50g당 1,150원→1g당 23원 · 제3종 엽권련: 50g당 3,270원→1g당 65.4원 · 제4종 각련: 50g당 1,150원→1g당 23원 · 씹는 담배: 50g당 1,310원→1g당 26.2원 · 냄새 맡는 담배: 50g당 820원→1g당 16.4원
2014	담배소비세-신규 담배 과세대상에 포함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은 담배를 추가
2015	개별소비세	· 국세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도입
2015	담배소비세-세율조정	· 제1종 권련: 20개비당 641원→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1g당 23원→36원 · 제3종 엽권련 1g당 65.4원→103원 · 제4종 각련 1g당 23원→36원 ·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400원→628원
2017	담배소비세	· 연초 고품질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신설
2017	개별소비세	· 권련형 전자담배의 과세규정 준비 중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c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접속일: 2017. 5. 17)의 각 법령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세

- 담배와 관련된 소비세에서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12월 23일이며, 개정이유는 ‘흡연을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담배를 추가하게 되었음¹⁰⁾
 - 동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됨
- 「개별소비세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를 의미함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였음(2014. 1. 21. 개정)

1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별소비세법」조문별(제1조) 연혁 설명 참조, <https://tcsi.hometax.go.kr/docs/main.jsp>, (접속일: 2017.6.15.)

〈표 II-3〉 담배의 종류와 개별소비세 세율

구분	의미	세율
1. 피우는 담배		
제1종 결련	· 잎담배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결련 제조기를 이용하여 결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0개비당 594원
제2종 파이프담배	· 고급 특수 잎담배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1g당 21원
제3종 엽결련	·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충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1g당 61원
제4종 각련	· 하급 잎담배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결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1g당 21원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
제6종 물담배	·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1g당 422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1g당 215원
3. 냄새 맡는 담배		
·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1g당 15원

출처: 「개별소비세법」 별표(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라.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

1) 담배소비세

(정의 및 과세대상)

- 담배소비세의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의미하며,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소비세의 담배구분과 동일하며, 과세대상을 다음과 같이 열거주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¹¹⁾
 - 피우는 담배
 - 쉐련(지령 §60 1호), 파이프담배(지령 §60 2호), 엽쉐련(지령 §60 3호), 각련(지령 §60 4호), 전자담배(지령 §60 5호), 물담배(지령 §60 5호의 2)¹²⁾
 - 씹는 담배(지령 §60 6호)
 - 냄새맡는 담배(지령 §60 7호)
 - 머금은 담배(지령 §60 8호)

(과세표준 및 세율)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하며, 세율은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음¹³⁾
 - 지난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전자담배의 세율을 ①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②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연초 고형물 1g당 88원으로 개정함

11) 「지방세법」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

12) 최근 물담배, 머금은 담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담배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음에도 종전 담배소비세는 쉐련, 파이프담배, 엽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에만 과세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14년 5월 20일 법 개정시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물담배와 머금은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음

13) 「지방세법」 제51조

〈표 II-4〉 우리나라의 담배소비세 세율

구분	2015년 이전		2015년 이후
1. 피우는 담배			
꺠련	20개비당 641원		20개비당 1,007원
파이프담배	1g당 23원		1g당 36원
엽꺠련	1g당 65.4원		1g당 103원
꺠련	1g당 23원		1g당 36원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ℓ당 400원		· 니코틴 용액 사용: 니코틴 용액 1mℓ당 628원 · 연초 고흥물 사용: 연초 고흥물 1g당 88원
물담배	1g당 455원		1g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씹는 담배	1g당 26.2원	1g당 364원
	머금는 담배	1g당 232원	
3. 냄새 맡는 담배	1g당 16.4원		1g당 26원

출처: 「지방세법」 제52조 및 조문 개정내용 참조하여 저자 작성

2) 지방교육세

- 담배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가 과세표준이며,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로 산출한 금액이 세액임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됨
 -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임

마.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징수하며 종량세 방식으로 부과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은 담배소비세와 동일함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함¹⁴⁾
 - 쫄면: 20개비당 841원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과 연초 고형물 1g당 73원¹⁵⁾
 - 파이프담배: 1g당 30.2원
 - 엽쫄면(葉卷煙): 1g당 85.8원
 - 각련(刻煙): 1g당 30.2원
 - 씹는 담배: 1g당 34.4원
 - 냄새 맡는 담배: 1g당 21.4원
 - 물담배: 1g당 1,050.1원
 - 머금은 담배: 1g당 534.5원

- 담배 제조자 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 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함
 - 제조자 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함

14) 개정 2011.6.7., 2014.5.20., 2014.12.23., 2017.3.21.

15) 연초고형물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되고 있으나, 부담금 부과규정이 없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유 참조(공포번호 제14692호)

2) 폐기물부담금

-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에서 부과 및 징수하며 20개비의 제1종 껴련과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음
 - 종류 및 규격: 담배(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
 - 요율 및 금액기준: 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에는 20카트리지를 말한다)당 24.4원

- 다음의 <표 II-5>를 보면 일반 담배의 제세부담금 비중은 담배소비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1989년 이후 모두 60%를 초과하였으며, 2017년 현재 담배의 제세부담금 비중은 73.7% 수준임
 - 2005년 1월에는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인상됨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그 이전에 비해 약 500원 정도 상승함

<표 II-5> 우리나라 일반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등의 변화 추이

(단위: 원/갑)

	1989. 1~	1994. 1~	1996. 7~	1997. 5~	1999. 1~	2001. 1~	2002. 1~	2002. 2~	2005. 1~	2008. 1~	2015. 1~
담배소비세	360	460	460	460	460	510	510	510	641	641	1,007
지방교육세			184	184	184	255	255	255	321	321	443
공익기금		20									
폐기물부담금			4	4	4	4	4	4	7	7	24.4
국민건강증진기금				2	2	2	2	150	354	354	841
연초생산안정화기금							10	10	15	15	15
개별소비세											594
소계	360	480	648	650	650	771	781	929	1,338	1,323	2,909
부가가치세					100	118	118	136	227	227	409
총계	360	480	648	650	750	889	899	1,065	1,565	1,550	3,318
판매가	450	900	1,000	1,100	1,100	1,300	1,300	1,500	2,500	2,500	4,500
제조원가 및 마진	90	420	352	450	350	411	401	435	935	950	1,182
제세부담금 비중(%)	80.0	53.3	64.8	59.1	68.2	68.4	69.2	71.0	62.6	62.0	73.7

주: 1.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율은 갑당(20개비) 정액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의 10%

출처: 현진관·성명재(2012), p.162 <표 V-2-19> 참조 및 현재 각 법령 세율 및 부담금 수준에 따라 재구성하였음

2.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가. 전자담배 유형

- 우리나라의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은 「담배사업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담배사업법」 제2조에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에 전자담배는 “증기로 흡입하거나”에 해당하는 담배로 볼 수 있음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제5호에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라고 규정함

-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액상 형태의 전자담배, 연초 고형물형 전자담배, 쥘런형 전자담배로 구분할 수 있음¹⁶⁾

- 니코틴을 액상상태에서 증기화하여 흡입하는 장치로, 전자담배기기, 니코틴 액상, 희석제(프로필렌, 글리세린), 향료로 구성되어 있음¹⁷⁾
 - 전자담배는 쓰고 버리는(disposable) 카트리지 형태와, 리필용기에 니코틴 용액을 채워 쓰는 충전식(refillable tank) 전자담배로 구분될 수 있음
 - 국내에서 주로 유통되는 전자담배는 충전식 담배임

- 연초고형물형 전자담배는 연초고형물과 캡슐로 구성되어 있음
 - 전자기기에 고형물 캡슐을 충전하여 기기를 통해 흡연하는 방식임

16) 사진은 부록 참조

17) 최성은(2015), pp.4-5 내용을 요약하여 재구성하였음

- 2017년 6월 판매를 시작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껌련형 전자담배는 연초, 껌련지, 필터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 껌련형 스틱을 전자기기에서 가열하여 흡연하는 방식임
- 전자담배의 분류는 연초잎 추출 여부와 니코틴 함유 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
 - 그러나 「담배사업법」에서의 담배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연초의 잎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담배는 담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연초잎 추출 여부에 따라 담배와 담배대용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약사법」에서는 니코틴 여부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구분하고 있음

나. 전자담배 시장 현황

- 우리나라의 전자담배와 니코틴 액상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4년 전자담배 수입량은 전년대비 348.2%, 수입금액은 342.0% 증가하였고, 전자담배용 용액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283.8%, 수입금액은 344.5% 증가하였음¹⁸⁾
 - 2015년 전자담배 수입금액은 전년대비 33.3%, 전자담배 용액은 21.2% 증가하였으며, 껌련담배 수입금액도 전년대비 117.3% 증가함

〈표 II-6〉 최근 3년간 담배 수입동향

품목명	구분	수입량 및 수입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12년	'13년	'14년	'15년	'13년	'14년	'15년
껌련담배	중량(톤)	1,255	973	823	1,877	△22.5	△15.4	128.1
	금액(천 달러)	25,892	18,573	15,904	34,568	△28.3	△14.4	117.3
전자담배	중량(톤)	13	31	138	196	138.2	348.2	41.6
	금액(천달러)	1,007	2,295	10,144	13,525	127.9	342.0	33.3
전자담배용 용액	중량(톤)	8	17	66	86	115.5	283.8	30.4
	금액(천달러)	460	997	4,433	5,372	116.6	344.5	21.2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2015년 담배 수입 동향」, 2016.1.28., p.1

18) 관세청 보도자료, 「2015년 담배 수입 동향」, 2016.1.28., p.1

다. 전자담배의 규제와 제세부담금

-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 제조허가, 제품 표시 및 표기, 판매 및 유통, 금연구역 지정 등에 있어 쉐련담배와 동일한 법령하의 권리 및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
 - 다만, 전자담배 액상용액에 대해서는 식약처 고시가 적용됨

-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쉐련담배와 같이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니코틴 용액의 부피 또는 연초고형물 중량에 따라 종량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 현재 니코틴 용액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1,823원, 연초고형물 사용 전자담배는 연초고형물 1g당 223.4원이 부과되고 있음
 - 다만, 연초고형물을 이용하는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세율 규정은 없음

〈표 II-7〉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현황

구분	쉐련담배 (갑당)	전자담배	
		2015년 이전	2015년 이후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 52)	1,007원	· 400원/니코틴 용액 1ml	· 628원/니코틴 용액 1ml · 88원/연초 고형물 1g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 151)	443원	· 200원/니코틴 용액 1ml	· 276원/니코틴 용액 1ml · 38원/연초 고형물 1g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 1 ② 6. [별표])	594원	· -	· 370원/니코틴 용액 1ml · -
건강증진부담금 (국민건강증진법 § 23)	841원	· 221원/니코틴 용액 1ml	· 525원/니코틴 용액 1ml · 73원/연초 고형물 1g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을 시행령 § 11 [별표 2])	24.4원	· 7원/20 카트리지	· 24.4원/20 카트리지
세금 및 부담금 소계	2,909.4원	· 828원/니코틴 용액 1ml	· 1,823원/니코틴 용액 1ml · 223.4원/연초 고형물 1g

주: 1) 개별소비세는 2014년 12월에 신설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부과

2)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 과세액의 43.99%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c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접속일: 2017. 5. 17)의 각 법령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 고농도 니코틴 액상의 분리형 유통에 따라 니코틴 용액에 대한 담배 관련 소비세 등의 세금이 탈루되는 등 니코틴 전자담배 제세부담금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2015년 일반담배의 제세부담금 인상으로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도 1ml 당 828원에서 1,823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니코틴 용액에 대한 과세회피의 다양한 위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표 II-8〉 전자담배 관련 예규판례

구분	내용
[세정-5278, 2007.12.1.] 연초의 잎을 주원료로 하는 니코틴을 이용하여 흡연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조된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담배에 해당함	일반담배와 모양이 유사한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을 가공하여 껍질지에 말아서 제조된 일반 껍질용 담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초의 잎에서 주원료(니코틴)를 추출하여 니코틴을 흡연하도록 제조되어있고, 그 사용 용도가 흡연용에 해당하는 이상 담배로 보는 것이 타당
[지방세운영-396, 2012.02.07]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 액상과 향신료를 각각 수입하여 이를 혼합하여 흡연할 수 있도록 2개 제품을 하나의 세트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향신료가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48조에 열거된 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바, 연초나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향신료의 경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 성립 당시 니코틴 용액과 향신료가 혼합된 향신료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임
[지방세운영-112, 2013.01.11.] 수입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체 완제품(10ml, 니코틴 2ml, 향료 등 8ml) 용량 중 니코틴(2ml)에 대해서만 담배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완제품의 전체 용량(10ml)에 대하여 담배소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전자담배 완제품 전체 용량(10ml)에 대하여 담배소비세(4,000원)를 과세하여야 하며, 만약 니코틴(2ml)을 기준으로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추징과 함께 별도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됨
[조심2014지699, 2014.06.13.]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의 담배로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지방세법 등을 근거로 담배소비세 과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위법 여부	전자담배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전자담배 역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로 보아 규율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전자담배는 구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 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1.9.1. 선고, (2011구합21157 판결 같은 뜻)

출처: 삼일아이닷컴, 예규 및 판례 참조하여 정리, <http://www.samii.com/tax/YeguPanreSearch.asp>, (접속일: 2017. 5. 25)

3.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입법안

- 전자담배는 도입 당시부터 담배인지 금연보조제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며, 지난 2008년 11월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법제처는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내 놓은 바 있음¹⁹⁾
 - 2007년 후반부터 전자담배가 국내에 시판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전자담배 수입업자는 전자담배가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회신함
 - 수입업자는 전자담배가 연초 잎을 원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였고, 연기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함
 - 이에 기획재정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며,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함
 - 법제처는 “전자담배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을 사용하며, 흡입방식으로 체내에 니코틴을 흡수하는 제품이고,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고 회신함
- 기획재정부 등 담배의 제세부담금과 관련된 정부기관에서는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기로 하였으나, 과세하지 않고 있다가 2010년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과세근거를 마련한 후 2011년 1월부터 관련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함
 - 당시 행정안전부는 2010년 1월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쉐련형 담배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19) 법제처, 법령해석, 「전자담배도 담배일까?」, 보도자료, 2008. 11, pp.1~2

-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의 부과를 위해 복지부 및 환경부 등과도 사전협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과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자 함
- 2010년 6월 4일, (구)「지방세법」 제223조 제2항 제1호 마목에 제5종 전자담배를 추가하여 과세근거를 마련하고²⁰⁾, 동법 제22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세율을 니코틴 용액 1ml당 400원으로 정하였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에도 기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쥘련형 담배만 규정하던 것에 전자담배를 추가하였으며,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221원을 부과하기로 함(2011. 6. 7. 일부개정, 2011. 12. 8. 시행)
 - 이 밖에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50%(200원), 폐기물부담금은 20카트리지 기준(7원)으로 부과함
- 2015년부터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이 인상되었고, 개별소비세도 신설됨에 따라 전자담배도 니코틴 용액 1ml당 기존 828원에서 995.4원 늘어난 총 1,823.4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됨
 -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인상과 함께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였음
 - 담배 중 쥘련담배는 20개비당 594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을 부과하기로 함
 - 이 밖에 담배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43.99%인 276원, 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 1ml당 525원, 폐기물부담금은 24.4원이 부과됨
- 전자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대부분 용량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니코틴과 향료를 별도로 판매하는 ‘분리형’ 제품판매가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음

20) 참고로 2014년에는 신종 담배로 물담배 및 머금은 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세법 개정이 있었음(물담배: 물을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머금은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 등은 니코틴 용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니코틴의 농도와 상관없이 같은 1ml인 경우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고, 향료 및 용해제는 별도로 판매할 경우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따로 수입 및 판매하는 행태가 주를 이룸
 - 또한 니코틴과 향료가 혼합된 ‘일체형’ 제품이 아닌 ‘분리형’ 제품은 소비자가 이를 직접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 니코틴 농도를 과다하게 혼합하여 사용함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함
 - 이에 정부는 니코틴 함량이 정해진 혼합형 제품 판매를 의무화할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013년 10월부터 수입 및 유통되던 연초 고품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제세부담금 부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15년 국정감사 이후 진행됨
- 2015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세가 되는데, 연초 고품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음
 - 연초 고품물을 사용한 전자담배는 2013년부터 수입 및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²¹⁾ 당시 이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 등 과세규정이 없었음²²⁾
- 연초 고품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부과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2016년 7월에는 「지방세법」, 2016년 11월에는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함²³⁾
- 박남춘 의원은 과세형평성을 근거로 연초 고품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근거를 만들기 위해 일반 쉐련과 비교하여 무게 기준으로

21)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 10. 부터 Japan Tobacco Inc.의 연초 고품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월 200여개 수입하여 최저세율(36원/1g)로 임의신고·납부하였으나, 현재는 시판이 중단된 상태이며 새로운 수입판매업자가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참고, 2016. 12. p.5)

22)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6. 12, p.5

23)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접속일: 2017. 5. 16)

세율을 책정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을 발의함

- 박남춘 의원은 연초 고형물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1g당 88원, 개별소비세율은 1g당 51원, 국민건강부담증진금은 1g당 73원을 부과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제시함

- 궤련의 중량 대비 담배소비세율을 기준으로, 최다 판매 궤련 5종의 20개비 평균 중량과 담배소비세율을 감안하여 연초 고형물의 담배소비세율을 설정함($1,007\text{원} \div 11.488\text{g} = 87.7\text{원/g}$)²⁴⁾
- 궤련의 담배소비세 대비 개별소비세 비율($59\% = 594\text{원} \div 1,007\text{원}$)을 기준으로 연초고형물의 개별소비세율을 설정함($88\text{원} \times 59\% = 51\text{원}$)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담배소비세 대비 부담금의 비중이 83.5~83.6%이며, 이미 「지방세법」 개정으로 연초 고형물 1g당 88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므로 1g당 73원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됨²⁵⁾

□ 이처럼 연초 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행자위 소관의 「지방세법」과 복지위 소관의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안은 통과되어 과세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기재위 소관의 「개별소비세법」은 현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세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 연초 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2016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2017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3월 23일 공포되었음
-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개별소비세법」도 개정하여 과세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조세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 등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임

24)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의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017.2, p.3

25)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2, pp.45~48

- 2017년 초에는 새로운 전자담배 형태인 쉐련과 유사한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를 사용하는 쉐련형 전자담배 제품이 수입 및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 박인숙 의원은 기존의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달리 쉐련과 유사한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를 사용하는 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 및 유통에 대비하여 일반 쉐련과 동일한 수준의 세율을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함
 - 쉐련과 유사한 쉐련형 전자담배(GLO, IQOS 등)의 법률적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별표의 피우는 담배란 중 제5종 전자담배의 세율란에 “연초 및 연초 가공물을 사용하는 쉐련 20개비당 594원”을 신설하도록 함
 -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부담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동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연초 및 연초 가공물을 사용하는 쉐련: 20개비당 841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함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제4항 단서를 신설하여 쉐련형 전자담배에 현행 쉐련의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함
 - 김영진 의원은 「지방세법」에서 전자담배를 니코틴 용액 및 연초 고형물 외에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를 사용하는 쉐련형 전자담배를 따로 구분하여 쉐련과 동일한 담배소비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 「지방세법」 제52조제1항제1호마목에 “연초 및 연초 가공물을 사용하는 쉐련 경우: 20개비당 1,007원”을 추가하여 일반 쉐련과 동일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자 함

- 2017년 6월부터 일부 담배제조회사에서는 쉐련형 전자담배로 볼 수 있는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한 제품 판매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음
 - 필립모리스 코리아는 쉐련형 전자담배인 ‘히츠’를 2017년 6월부터 판매하며, 이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로 구분하여 납부함

- 연초 고품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는 1g당 88원, 국민건강부담증진금은 1g당 73원이 부과됨
 - 또한 개별소비세는 연초 고품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파이프담배로 판단하여 1g당 21원의 세금을 납부함
- 이처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이 출시되자, 지난 6월 16일에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 2월 박인숙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세율의 과세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함
- 김광림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료, 모양, 흡입방식, 연기 배출 등이 사실상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인식되며, 담배의 제세부담금과 관련된 정부부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한 제품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일반담배와 같은 세율 적용을 주장함
 - 이에 전자담배 항목에서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를 ‘궐련형’과 ‘기타유형’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은 20개비당 1,007원, 「개별소비세법」은 20개비당 594원, 「국민건강증진법」은 20개비당 841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함

〈표 II-9〉 최근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관련 법안 개정 및 논의

일시	주요내용
2007년 후반	전자담배 국내 시판 시작
2008년 11월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법제처)
2011년 1월	니코틴을 포함한 전자담배에도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함 - 「지방세법」에 과세근거 마련(2010. 6. 4) -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과세근거 마련(2011. 6. 7)
2013년 10월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수입
2015년 1월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인상
2015년 1월	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신설)
2015년 9월	연초 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 규정 논의 시작(국정감사 등)
2016년 7월	(박남춘 의원)연초 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부과 규정에 대한 개정안 발의(「지방세법」) - 일반 궤련과 비교하여 무게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
2016년 11월	(박남춘 의원)연초 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부과 규정에 대한 개정안 발의(「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 일반 궤련과 비교하여 무게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
2017년 1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 - 연초 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 담배소비세율 1g당 88원
2017년 2월	(박인숙, 김영진 의원)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를 사용하는 전자담배(소위 궤련형 전자담배)의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발의(「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 궤련과 동일한 제세부담금 부과
2017년 3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 연초 고형물을 사용한 전자담배: 담배소비세율 1g당 73원
2017년 6월	궤련형 전자담배로 볼 수 있는 제품(히츠) 출시 - 관련 제세부담금 부과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논란
2017년 6월	(김광림 의원)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정안 발의(「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 - 궤련과 동일한 제세부담금 부과

출처: 본문 내용 및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의안정보」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접속일: 2017. 5. 16.

Ⅲ. 외국의 담배 과세제도

1. OECD의 담배 관련 소비세

- OECD 국가 대부분은 담배 관련 소비세를 종량세와 증가세의 혼합방식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음
 - 종량세와 증가세 혼합방식은 저가 담배와 고가 담배 제품 간의 균형을 제공함
 -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담배 관련 소비세를 종량세와 증가세 혼합형식의 과세체제로 시행하고 있음
 - 담배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는 고가 담배와 저가 담배의 담배소비세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의 역진성이 발생할 수 있음

-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소매가격 또는 1,000개비 과세기준으로 담배소비세 이외에 모든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담배에 부과하고 있음

〈표 Ⅲ-1〉 OECD 국가의 담배 관련 소비세 과세 현황

	담배(cigarettes)			시가(cigars)			말아 피는 담배(rolling tobacco)		
	1,000개비당 종량세		소매가격 대비 소비세 비중(%)	1,000개비당 종량세		소매가격 대비 소비세 비중(%)	1,000개비당 종량세		소매가격 대비 소비세 비중(%)
	자국통화	USD		자국통화	USD		자국통화	USD	
호주 ¹⁾	530.96	398.92	0.00	각주참조		0.00	663.72	498.66	0.00
오스트리아 ²⁾	45	49.94	40.00	0.00	0.00	13.00	0.00	0.00	56.00
벨기에	39.52	43.86	45.84	0.00	0.00	10.00	23.70	26.30	31.50
캐나다	105.15	82.28	각주참조 ³⁾	22.89	17.91	각주참조 ³⁾	131.44	102.85	각주참조 ³⁾
칠레 ⁴⁾	46,323.00	70.80	30.00	0.00	-	52.60	0.00	-	59.70
체코	1,290.00	52.45	27.00	1,420.00	57.74	-	1,896.00	77.10	-

	담배(cigarettes)			시가(cigars)			말아 피는 담배(rolling tobacco)		
	1,000개비당 총량세		소매가격 대비 소비세 비중(%)	1,000개비당 총량세		소매가격 대비 소비세 비중(%)	1,000개비당 총량세		소매가격 대비 소비세 비중(%)
	자국통화	USD		자국통화	USD		자국통화	USD	
덴마크 ⁵⁾	1,182.50	175.84	1.00	500.00	74.35	10.00	788.50	117.25	0.00
에스토니아 ⁶⁾	46.50	51.61	34.00	211.00	234.18	0.00	61.00	67.70	0.00
핀란드 ⁷⁾	37.50	41.62	52.00	0.00	0.00	31.00	26.00	28.86	52.00
프랑스	48.75	54.11	49.70	19.00	21.09	23.00	67.50	74.92	32.00
독일	98.20	108.99	21.69	14.00	15.54	1.47	48.49	53.82	14.76
그리스	82.50	91.56	20.00	0.00	0.00	35.00	156.70	173.92	0.00
헝가리 ⁸⁾	15,700.00	56.23	25.00	0.00	0.00	14.00	14,000.00	50.14	0.00
아이슬란드	22,900.00	174.30	0.00	각주참조 ⁹⁾		0.00	16,450.00	124.72	0.00
아일랜드	271.96	301.84	9.20	각주참조 ¹⁰⁾		0.00	291.68	323.73	0.00
이스라엘	395.00	101.62	각주참조 ¹¹⁾	0.00	0.00	각주참조 ¹¹⁾	454.03	116.81	0.00
이탈리아	17.34	19.25	58.70	0.00	0.00	23.00	0.00	0.00	58.50
일본 ¹²⁾	12,244.00	101.19	0.00	12,244.00	101.19	0.00	12,244.00	101.19	0.00
대한민국	145,450.00	109.25	64.64	각주참조 ¹³⁾		0.00	103,200.00	77.52	0.00
라트비아 ¹⁴⁾	54.20	60.16	25.00	42.69	47.38	-	58.00	64.37	-
룩셈부르크	18.39	20.41	46.65	0.00	0.00	10.00	10.00	11.10	34.30
멕시코	350.00	22.05	38.77	각주참조 ¹⁵⁾			각주참조 ¹⁵⁾		
네덜란드	178.28	197.87	1.09	0.00	0.00	5.00	76.68	87.33	4.60
뉴질랜드	각주참조 ¹⁶⁾		0.00	각주참조 ¹⁶⁾		0.00	386.14	269.27	0.00
노르웨이	2,500.00	310.02	0.00	2,500.00	310.02	0.00	2,500.00	310.02	0.00
폴란드 ¹⁷⁾	206.76	54.84	31.41	393.00	104.24	-	141.29	37.48	31.41
포르투갈	90.85	100.83	17.00	0.00	0.00	25.00	78.00	86.57	20.00
슬로바키아	59.50	66.04	23.00	71.11	78.92	-	71.11	78.92	0.00
슬로베니아	68.82	76.38	21.18	0.00	0.00	6.00	40.00	44.40	35.00
스페인	24.10	26.75	51.00	0.00	0.00	15.80	22.00	24.42	41.50
스웨덴	1,500.00	177.96	1.00	1,320.00	156.60	0.00	1,833.00	217.46	0.00
스위스	118.32	122.99	25.00	5.60	5.82	1.00	38.00	39.50	25.00
터키	221.00	81.16	65.25	221.00	81.16	40.00	221.00	81.16	65.25
영국 ¹⁸⁾	189.49	289.74	16.50	236.37	361.42	0.00	185.74	284.01	0.00
미국	135.00	135.00	각주참조 ¹⁹⁾						

- 주: 1) 호주: 한 개비당 0.8g 이하인 담배의 경우 한 개비당 0.53096호주달러의 소비세율로 과세됨. 기타 담배상품은 kg당 663.72호주달러 과세
- 2) 오스트리아: 소매가격의 13%로 과세하고 1,000개비당 최소 100유로로 과세됨. 궐련의 경우 최저소비세는 kg당 80유로임. 담배에 대한 최소 소비세는 WAP에 속하는 담배에 대한 총 소비세 부담의 98%
- 3) 캐나다: 시가에 대한 소비세는 1,000개 시가당 22.88559캐나다달러에 시가당 0.08266캐나다달러 또는 소매가격의 82% 중 더 큰 금액을 바탕으로 추가 소비세 가산함. 소매가격은 GST/HST의 적용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 HST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지방 판매세에 부과됨
- 4) 칠레: 담배 제품의 판매에 19%의 VAT와 가공담배, 담배 및 시가의 판매 또는 수입에 대해 세금이 부과됨. 가공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매가격의 59.7%임. 소비세의 과표는 VAT와 담배에 부과된 세금을 포함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임
- 5) 덴마크: 기타 굵은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1000g당 DKK 738.5임
- 6) 에스토니아: 담배에 있어서, 최소 소비세액은 1,000개비당 90유로임
- 7) 핀란드: 종이담배는 소매가의 60% 소비세, 기타 담배류는 kg당 28.75유로와 소매가의 48%. 최소 소비세는 담배의 경우 1,000개비당 188.50유로, 파인컷 궐련의 경우 kg당 114.50유로. 2016년 7월 1일 현재,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1,000개비당 41.50유로와 소매가의 52%. 최소소비세는 담배 1,000개비당 200유로, 시가의 소비세는 소매가의 32%. 파인컷 궐련의 최소소비세는 kg당 121.50유로, 기타 담배류는 kg당 33.00유로와 소매가의 48%임
- 8) 헝가리: 최소소비세는 담배에 대해 1,000개비당 HUF 28,000, 시가에 대해 1,000개비당 HUF 4,000. 소매가격에 포함된 세금의 %로 VAT는 21.26%임
- 9) 아이슬란드: 시가에 대해 세금이 없고 시가의 1,000g당 ISK 16,450의 세율.(궐련에 대해 동일한 세율)
- 10) 아일랜드: 담배에 대한 소비세는 1,000개비당 271.96유로에 담배가 소매로 판매되는 가격의 9.20% 또는 1,000개비당 1,077.61유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함. 시가에 대한 소비세는 kg당 315.359유로, 파인컷 궐련 담배는 kg당 291.683유로, 기타 담배는 kg당 218.783유로로 과세됨
- 11) 이스라엘: 담배와 시가에 대한 세율은 각각 도매가격의 270%와 90%로 과세됨
- 12) 일본: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분으로 구성됨
- 13) 대한민국: 시가에 대한 소비세는 1,000g당 294,800원임. 국세(개별소비세)는 2015년부터 부과됨
- 14) 라트비아: 2016년 7월 1일부터 특정 소비세는 1,000개비당 56.20 유로와 소매가격의 25%. 최저 소비세는 1,000개비당 93.70유로임
- 15) 멕시코: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 가격에 160%의 종가세를 모든 종류의 담배에 적용함. 시가나 궐련의 제조 전체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면 30.4%의 감경세율로 과세됨
- 16) 뉴질랜드: 담배 1,000개비당 무게가 0.8kg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545.39뉴질랜드달러, 초과되면 777.18뉴질랜드달러를 부과함. 기타 담배의 경우 kg당 681.72뉴질랜드달러가 부과함
- 17) 폴란드: 2015년 1월 1일 이후 시가에 대한 소비세율은 kg 기준으로 계산함
- 18) 영국: 시가에 대한 소비세는 kg당 부과하는 종량세이며, 기타 피는 담배와 기타 씹는 담배는 kg당 84.98파운드로 부과함
- 19) 미국: 주세는 주별로 다양하며, 연방세와 주세를 가중평균하면 담배 1,000개비당 135달러임
- 출처: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142~144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는 주세와 담배 이외에는 종가세 구조 형태임

- 그러나, 2014년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때 국세인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해 물품가격(공장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의 100분의 77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²⁶⁾

26)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14.9.15.), http://www.mosf.go.kr/lw/lap/detailTbPrvntcView.do?menuNo=7040000&searchNttId1=OLD_40917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55, 접속일: 2017. 5. 30.

- 기존 담배에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의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별소비세는 증가세 방식으로 도입하고자 했음
 - 그러나 2014년 최종적인 세법개정안에서 현행과 같은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되어 입법되었음
 - 수입담배와 국산담배의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담배 가격에 상관없는 종량세로 변경됨
- 다음의 <표 III-2>에서 보듯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35개국 중 32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소비세 수준은 26위를 기록하는 등 담배가격과 소비세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담배가격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로 12.81달러(17,050원)이며, 담배에서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로 86.51%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3.38달러(4,500원)이며, 담배 가격에서 소비세가 약 73.74%를 차지하고 있음²⁷⁾
- 담배가격에 소비세 비중을 곱해 산출한 담배 세부담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으로 9.57달러(12,740원) 정도임
- 우리나라는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 부담 수준이 OECD 국가에서 32위로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2.49달러(3,315원)정도가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음
- OECD 국가의 일반 담배 가격 평균은 6.14달러(8,172원)이며, 소비세 비중은 74.86%, 소비세액은 4.53달러(6,029원)임

27)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145, 환율 1달러=약 1,331원 적용

〈표 III-2〉 OECD 국가의 일반담배 가격과 세부담 비중(2015년 기준)

(단위: 달러, %)

국가	담배가격	순위	소비세 비중	순위	세부담	순위
호주	12.81	1	56.76	34	7.27	5
오스트리아	4.81	21	77.46	19	3.72	21
벨기에	6.00	16	77.10	21	4.63	15
캐나다	7.24	10	69.80	27	5.05	12
칠레	3.76	27	82.73	5	3.11	24
체코	3.26	33	76.56	23	2.49	31
덴마크	6.07	15	78.89	13	4.79	14
에스토니아	3.41	31	80.96	8	2.76	28
핀란드	6.30	12	83.15	4	5.24	9
프랑스	7.49	9	80.81	9	6.05	7
독일	5.93	17	74.44	25	4.41	16
그리스	4.11	24	83.20	3	3.42	23
헝가리	3.79	26	75.93	24	2.88	26
아이슬란드	9.06	6	56.89	33	5.15	11
아일랜드	10.30	5	86.51	1	8.91	3
이스라엘	8.10	8	78.87	14	6.39	6
이탈리아	5.02	19	76.73	22	3.85	19
일본	3.55	28	64.36	31	2.29	34
대한민국	3.38	32	73.74	26	2.49	32
라트비아	3.10	34	80.30	10	2.49	33
룩셈부르크	5.77	18	68.20	29	3.94	17
멕시코	2.99	35	67.33	30	2.01	35
네덜란드	6.59	11	78.51	16	5.18	10
뉴질랜드	11.85	3	77.34	20	9.17	2
노르웨이	12.65	2	69.20	28	8.75	4
폴란드	3.53	29	81.24	7	2.87	27
포르투갈	4.78	22	77.85	18	3.72	20
슬로바키아	3.46	30	79.30	12	2.75	29
슬로베니아	3.90	25	78.43	17	3.06	25
스페인	4.93	20	78.82	15	3.88	18
스웨덴	6.24	13	79.31	11	4.95	13
스위스	8.84	7	60.25	32	5.32	8
터키	4.22	23	82.62	6	3.49	22
영국	11.38	4	84.10	2	9.57	1
미국	6.23	14	42.54	35	2.65	30
평균	6.14		74.86		4.53	
중위값	5.77		77.85		3.88	

출처: OECD, 「Consumption Tax Trend 2016」, p.145 데이터로 저자가 재가공함

2. EU와 WHO의 담배 관련 지침

가. EU의 담배 관련 지침²⁸⁾

- EU집행위에서 발행한 ‘담배제품관련 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 2014/40/EU)’은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EU회원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제조되는 담배 제품 한 개비에 함유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 배출수준을 제시하고 있음²⁹⁾
 - 쉐련당 타르는 10mg, 니코틴은 1mg, 일산화탄소는 10mg(ISO기준)임
 - 제2조에서는 전자담배를 마우스피스나 카트리지와 탱크, 카트리지나 탱크없는 장치를 포함하는 구성요소를 통해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수증기를 소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전자담배 관련해서는 제20조~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자담배 제조시 사용된 성분물질과 양에 대한 보고의무, 리필용기 규격 요건(니코틴 함유량 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니코틴 함유량은 일회용 전자담배, 일회용 카트리지가 2ml를 초과하지 않고, 10ml의 부피를 초과하지 않는 전용 리필용기에 공급되어야 함
 - 니코틴 함유량은 20mg/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니코틴 함유액은 제7조(6)의 첨가제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³⁰⁾

나. WHO의 담배 관련 지침³¹⁾

-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은 WHO 후원하에 협상된 최초의 담배 관련 국제조약임

28) EU, 「Tobacco Products Directive 2014/40/EU」,

https://ec.europa.eu/health/sites/health/files/tobacco/docs/dir_201440_en.pdf, (접속일: 2017.6.5.)

29) EU, 「Tobacco Products Directive 2014/40/EU」

30) 담배제품이 건강상 이익을 준다는 비타민 혹은 기타 첨가물, 카페인, 타우린, 흥분제 화합물, 니코틴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첨가물 등

31)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http://www.who.int/fctc/text_download/en/, (접속일: 2017.6.5)

- 본 조약은 2005년 2월 27일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국내 관련법을 개정하였음
 - 담배 가격정책(가격과 조세: 제6조), 비가격정책(간접흡연 방지: 제8조), 담배제품 성분규제(제9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WHO는 담배를 “담뱃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피우거나 씹거나, 빨기, 냄새맡기를 위하여 제조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음³²⁾
-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격 및 세금조치(6-14)에서 담배제품이 세금이나 관세 부과없이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담배제품의 소비세는 담배에 고유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재화 및 서비스 가격과 비교하여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담배 소비 감소에 기인한 건강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함
-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수요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며, 높은 담배가격은 금연으로 이어지고, 흡연의 시작을 방지함
- 평균적으로 담배 1갑에 대해 10%의 가격인상은 고소득 국가에서 담배 수요를 약 4%,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구간에서 약 5%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저소득층의 담배 소비가 많은 경향이 있고, 가격변화에 더 민감함
 - 어린이 및 청소년도 성인보다 가격 인상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개입이 연령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담배규제계획(Tobacco Free Initiative)에서는 두 종류의 소비세가 담배 한 개비 또는 담배 중량에 따른 고정금액과 가격으로 과세를 권고함
- 다만, 이상적인 수준과 가능한 조합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있음³³⁾

32)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1(f)

33) WHO, <http://www.who.int/tobacco/economics/taxation/en/index1.html>, (접속일: 2017. 6. 16)

- 담배제품에 적용되는 세금 및 세금 구조의 모범사례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조세체계의 채택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 담배의 소비세 제세부담금이 최종소비자 가격의 70% 이상 차지하고, 담배가격 역시 물가와 소득 증가 이상 수준으로 매년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세금 인상에 따라 저가 제품으로 전환 시 담배 사용자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최소화함
 - 조세 회피와 탈세 기회를 감소하기 위한 담뱃세 행정을 개선함
 - 담배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를 포함하는 최첨단 모니터링, 추적 및 추적 시스템의 사용을 포함
 -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집행 및 신속하게 처벌함

3. 주요국의 담배 과세제도

가. 일본³⁴⁾

1) 일반담배 과세

- 담뱃세가 부과되는 담배의 종류는 흡연용의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구3급품의 담배로 구분됨³⁵⁾³⁶⁾
 - 흡연용의 담배는 쥘런, 파이프담배, 시가, 대담배로 구분됨³⁷⁾
 - 씹는 담배
 - 냄새 맡는 담배
 - 구3급품의 담배
 - 에코, 와카바, 신세이, 골든배트, 바이로렛, 우루 6종의 담배를 의미함

34) 일본 재무부,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sumption/index.htm,(접속일: 2017.5.16.)

35)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shiraberu/zeiho-kaishaku/tsutatsu/kihon/tabako/03.htm>,(접속일: 2017.5.16.)

36) 「담배세법」 제2조

37) 대담배는 담뱃대로 피우는 담배를 의미함

며, 출시연도가 오래되었고 일부 제품은 특정 지역에서만 판매되는 특징이 있음

- 구3급품의 담배는 일본담배협회에서 출시한 제품으로 담배 가격은 290~320엔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골든배트의 경우 1906년 9월에 출시하여 판매가격은 290엔정도로 저렴한 담배 제품임³⁸⁾
- 구3급품의 담배 중 바이올렛과 우루는 오키나와에서만 판매되고 있음

□ 담배의 제조자는 제조장에서 출하 시 담배에 대해 담뱃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담배를 보세지역에서 인수하는 자는 그 인수한 담배에 대해 담뱃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³⁹⁾

- 담뱃세의 국세는 담배가 제조장에서 출하 시 제조업자에게 부과되고, 담뱃세의 지방세는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담배 판매 시 도매업자에게 부과됨

□ 일본의 담뱃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종량세 형태로 동일한 비율로 과세되어, 담배 천개비 당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6,122엔이 부과되고 있음

-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뱃세, 담배특별세 2가지의 국세가 부과되고, 지방세는 도부현 담뱃세와 시정촌 담뱃세 2가지 세목이 부과됨
- 국세인 담배소비세, 담배특별세, 지방담배소비세(도부현, 시정촌 담뱃세)의 비율은 5대5로 구성되어 있음

□ 구3급품의 담뱃세율(국·지방세 합계)은 2018년 4월 1일부터 1,000개비당 9,312엔, 2019년 4월 1일부터 1,000개비당 12,244엔으로 인상되어 흡연용의 제조담배 등과 세율이 동일하게 부과될 예정임

38) 일본 담배산업주식회사, <https://www.jti.co.jp/tobacco/products/others/index.html>, (접속일: 2017.5.16)

39) 「담배세법」 제4조

〈표 III-3〉 일본의 담뱃세

(단위: 엔/천개비)

종류	국세			지방세			담뱃세 합계
	담뱃세	담배특 별세	소계	도부현 담뱃세	시정촌 담뱃세	소계	
· 흡연용의 담배 제1종 궐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시가 제4종 대담배 · 씹는 담배 · 냄새 맡는 담배	5,302	820	6,122	860	5,262	6,122	12,244
구3급품의 담배	2,950	456	3,406	481	2,925	3,406	6,812

주: 1) 파이프 담배 및 시가 담배는 1g을 1개로, 씹는 담배와 냄새 맡는 담배는 2g을 1개로 각각 환산함(1개= 1g= 12,244엔)
 2) 구3급품의 담배는 예코, 와카바, 신세이, 골든베트, 바이로렛, 올마 6종의 담배를 의미함
 3) 구3급품의 담뱃세율(국·지방세 합계)은 2018년 4월 1일부터 9,312엔/천 개비, 2019년 4월 1일부터 12,244엔/천개비로
 인상되어 흡연용의 제조담배 등과 동일하게 부과됨
 출처: 일본 재무부,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sumption/127.htm, (접속일: 2017.6.5)

- 일본에서 많이 판매되는 20개비 담배 한 갑의 가격인 440엔에 포함된 세금은 국세 122.44엔, 지방세 122.44엔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인 소비세액을 제외한 담배에 부과되는 총세액은 244.88엔으로 담배 가격의 약 55.7%를 차지함
 - 국세인 담뱃세가 106.04엔, 담배특별세 16.40엔이 부과되며, 지방세인 도부현 담뱃세가 17.20엔, 시정촌담뱃세가 105.24엔이 부과됨

〈표 III-4〉 일본의 일반 담배의 세부담

(20개 담배 한 갑 뉘비우스(궐련) 기준)

소매가	소비세액	국세		지방세		담뱃세 합계	총세액 (담뱃세, 소비세)
		담뱃세	담배특별세	도부현 담뱃세	시정촌 담뱃세		
440엔	32.59	106.04	16.40	17.20	105.24	244.88 (55.7%)	277.47 (63.1%)
		122.44		122.44			

출처: 일본 재무부,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sumption/129.htm, (접속일: 2017.5.25)

- 아래의 [그림 Ⅲ-1]에서 보듯이, 20개비 켈런 담배의 소비세는 55.65%, 부가가치세는 7.41%로 총 63.1% 정도임
- 기업의 담배 판매 마진을 살펴보면, 440엔 가격의 담배는 26.94%, 460엔 가격의 담배는 29.36% 수준임

[그림 Ⅲ-1] 일본의 담배 가격별 세금

	List price ¥440 per pack		List price ¥460 per pack			
Consumption Tax	¥ 32.6	7.41%	¥ 34.1	7.41%	} Retail price sales	
Retailer's Margin	¥ 44.0	10.00%	¥ 46.0	10.00%		
Total Tobacco Excise Tax	¥244.9	55.65%	¥244.9	53.23%		
National Tobacco Excise Tax	¥106.0	24.10%	¥106.0	23.05%		
Local Tobacco Excise Tax	¥122.4	27.83%	¥122.4	26.62%		
National Tobacco Special Excise Tax	¥ 16.4	3.73%	¥ 16.4	3.57%		
JT's Proceeds	¥118.5	26.94%	¥135.0	29.36%		
						} Net sales including excise taxes
						} Net sales excluding excise taxes

출처: 일본 담배산업주식회사, https://www.jt.com/investors/results/fact_sheet/pdf/factsheets.fy2016.pdf, (접속일: 2017.6.14)

- 1985년에 전매납부금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담뱃세는 1989년부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가 담배에도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에 국세인 담배특별세가 제정되었음
- 담뱃세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국세인 담뱃세가 2003년 7월 1일에 3,126엔으로 인상되었고, 2006년 3,552엔, 2010년 5,302엔으로 각각 인상되었음⁴⁰⁾
 - 담뱃세의 인상은 국민건강 측면에서 담배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행하였음

40) 일본 담배산업주식회사, 「Fact Sheets」, 2016, https://www.jt.com/investors/results/fact_sheet/pdf/factsheets.fy2016.pdf, (접속일: 2017.6.14.)

[그림 III-2] 일본의 담뱃세 변화 추이

Item	Tobacco Consumption Tax				Tobacco Excise Tax							
	Apr-1985		May-1986		Apr-1989	Apr-1997	Dec-1998	May-1999	Jul-2003	Jul-2006	Oct-2010	Apr-2014
	Ad valorem (%)	Specific (¥/1,000 units)	Ad valorem* (%)	Specific (¥/1,000 units)	Specific (¥/1,000 units)	Specific (¥/1,000 units)	Specific (¥/1,000 units)	Specific (¥/1,000 units)	Specific (¥/1,000 units)	Specific (¥/1,000 units)	Specific (¥/1,000 units)	Specific (¥/1,000 units)
National Tobacco Excise Tax	23.0	582	23.0	1,032	3,126	3,126	3,126	2,716	3,126	3,552	5,302	5,302
National Tobacco Special Excise Tax	-	-	-	-	-	-	820	820	820	820	820	820
Local Tobacco Excise Tax	22.4	550	22.4	1,000	3,126	3,126	3,126	3,536	3,946	4,372	6,122	6,122
Total Excise Tax	45.4	1,132	45.4	2,032	6,252	6,252	7,072	7,072	7,892	8,744	12,244	12,244
Consumption Tax	-	-	-	-	3.0%	5.0%	5.0%	5.0%	5.0%	5.0%	5.0%	8.0%
Tobacco Regulation Chang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bacco Consumption Tax was introduced *¥1,000 was deducted from tax base for Ad valorem Tobacco Consumption Tax was increas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sumption Tax was introduced Tobacco Consumption Tax was renamed Tobacco Excise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nsumption Tax was increased National Tobacco Special Excise Tax was introduc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iew of budget allocations in line with a revision of laws Tobacco Excise Tax was increased Tobacco Excise Tax was increased Tobacco Excise Tax was increased Consumption Tax was increased 			
(Reference)												
Retail Price of Mild Seven/MEVIUS per pack	¥200		¥220		¥220	¥230	¥250	¥250	¥270	¥300	¥410	¥430
Tax Incidence of Mild Seven/MEVIUS per pack (incl. Consumption Tax)	56.7%		59.7%		59.7%	59.1%	61.3%	61.3%	63.2%	63.1%	64.5%	64.4%

출처: 일본 담배산업주식회사, <https://www.it.com/investors/results/factsheet/pdf/factsheets.fy2016.pdf>, (접속일: 2017.6.14.)

2) 전자담배 과세

- 일본은 「약사법」에 따라 니코틴이 들어 있는 액체는 판매하지 않았으며, 일본 담배산업주식회사(JT)의 PloomTECH, 필립모리스사의 IQOS, BAT의 GLO 제품 등은 가열식 전자담배(Heat not Burn; HNB)라는 명칭하에 판매되고 있음
- JT가 2013년 12월부터 Ploom을 판매하고 있고, 필립모리스사에서 2014년 11월부터 IQOS를 판매하고 있음
- 니코틴을 함유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으로 니코틴 액상을 이용한 전자담배의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되어 승인되지 않았음⁴¹⁾

41) 田中 謙, 「電子タバコ・無煙タバコ規制の法システムと今後の法制的課題」, 『法學論集』 第66卷 第1号, 関西大学, 2016, p.5

- 「담배세법」에 가열식 전자담배의 정의 규정은 없으며, 가열식 전자담배는 잎담배를 사용한 일반 담배처럼 담뱃세가 부과됨
 - 전자담배 iQOS나 Ploom, 무연 담배 SNUS 같은 제품은 잎담배를 원료로 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의 대상임

- 일반 쉐련담배는 1갑당 244.88엔 정도가 담배 관련 소비세(부가가치세 제외)로 부과되어 세금 비중이 약 55.7%를 차지하며, 가열식 담배는 1g을 담배 1개비로 환산하여 계산함
 - 결과적으로 담배 1갑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 쉐련 20개비 담배는 277.47엔(부가가치세 포함) 정도가 담뱃세로 부과되어 세금이 약 63.1%를 차지하며, 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는 판매가격 460엔 중 226.30엔이 담뱃세로 약 49.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담배 대비 쉐련형 전자담배 세금 비중은 약 81.6%(226.30/277.47엔)임
 - 20개비 담배 한 갑의 경우 244.88엔이 부과되므로, 쉐련형 전자담배는 한 갑당 잎담배뿐만 아니라 필터, 캡슐 등을 포함한 중량으로 과세함
 - 전자담배 제품별로 1갑의 무게가 다르므로 쉐련형 전자담배 제품별로 세금부담이 상이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⁴²⁾

- 일본 후생노동성은 「간접흡연방지대책」에 신형 가열식 담배도 쉐련과 함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진행하고 있음⁴³⁾
 - 간접흡연 방지대책은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에는 실내 전면금연 등을 통해 간접흡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가열식 담배의 무해성이 증명되지 않은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 방지대책에 가열식 담배도 포함함

42) 일본 참의원 2017년 4월 10일 회의록,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93/0015/19304100015004a.html>, (접속일: 2017. 10.11.)

43)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stf/houdou/0000153190.html>, (접속일: 2017.5.2.)

나. 호주

1) 일반담배 과세

- 호주는 1921년부터 쉐련(cigarette), 시가(cigars), 파이프용 담배(smoking tobacco)로 구분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⁴⁴⁾⁴⁵⁾
 - 담배는 반드시 담뱃잎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⁴⁶⁾
 - 1999년 담배 무게당 부과하던 과세체계를 담배 개비로 부과기준을 변경하였음

- 담뱃잎 함유량 및 담배 종류에 따라 담뱃세율이 다르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GST(Goods and Services Tax)도 10% 부과됨
 - 2017년 3월 1일부터 실제 담뱃잎(tobacco content)이 0.8g을 초과하지 않는 담배(쉐련 및 얇은 시가)는 담배 스틱당 0.61726호주달러가 부과됨⁴⁷⁾
 - 20개비 담배의 경우 12.3452호주달러(약 10,510원)의 담배 세금이 부과됨
 - 대중적인 담배 Winfield 25s의 소매가격은 26.25호주달러(2016년 기준)임⁴⁸⁾
 - 담뱃잎이 0.8g 이상인 파이프담배, 담배 및 기타 흡연담배는 1kg당 771.60호주달러가 부과됨

44)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Excise-and-excise-equivalent-goods/Tobacco-excise/Excise-rates-for-tobacco/>, (접속일: 2017.6.8.)

45) 호주 담배협회, <http://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3-taxation/13-2-tobacco-taxes-in-australia>; (접속일: 2017.6.2.)

46) 호주 담배협회, <http://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2-tobacco-products/12-1-tobacco-in-australian-cigarettes>, (접속일: 2017.6.2.)

4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excise-and-excise-equivalent-goods/tobacco-excise/>, (접속일: 2017.6.7.)

48) 호주 담배협회, <http://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3-taxation/13-3-the-price-of-tobacco-products-in-australia>, (접속일 2017.6.2.)

- 호주의 담배소비세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2.5% 인상될 예정임
 - 2017년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0년 9월 1일까지 총 4회 담배소비세가 인상될 예정이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물가연동제에 따라 6개월마다 조정됨

2) 전자담배 과세

- 호주는 국가담배전략(National Tobacco Strategy 2012~2018)을 토대로 “흡연의 유행을 지양하고, 건강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담배제품에 대한 추가 규제 등을 고려하고 있음⁴⁹⁾
 - 호주정부는 담배시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전자담배 제품은 판매금지 하겠다는 방침임
 -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독극물로 간주하고 있으며, 판매 금지되고 있음

다. 프랑스

1) 일반담배 과세

- 우리나라의 개별소비세처럼 담뱃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EU 국가와 같이 종량세와 종가세가 혼합된 형태로 국세를 부과하고 있음
 - 담배 소비에 대해 담뱃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담뱃세의 제세부담금은 소매가격 대비 81.09%를 차지하고 있음⁵⁰⁾
- 담배의 과세대상은 쥘련, 시가, 말아 피는 담배, 기타 담배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담뱃잎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흡연용 제품은 담배제품으로 간주됨(의학적 용도의 제품을 제외)⁵¹⁾

49) 호주 정부 제약기구, http://www.nationaldrugstrategy.gov.au/internet/drugstrategy/publishing.nsf/Content/national_ts_2012_2018, (접속일 2017.6.2.)

50) 최성은(2014), pp.45~46의 내용을 요약함

- 궐련은 1,000개비당 48.75유로와 소매가격의 49.7%를 부과하며, 시가는 1,000개비당 19유로와 소매가격의 23%를 담뱃세로 부과함
- 종량세와 증가세가 혼합된 과세체제로, 증가세의 경우 최소 부과 담뱃세가 명시되어 있음
 - 담배별로 증가세 부분에 최소 부과 담뱃세 규정이 있음
 - 궐련은 종량세 이외에도 소매가격의 49.7%를 부과하며 최소 부과기준에 따라 1,000개비당 최소 210유로(약 26만 6천원, 20개비인 경우 약 5,320원)는 부과되어야 함

〈표 III-5〉 프랑스의 담뱃세(2017년)

과세대상	구분	세율
궐련	종량세 증가세	1,000개비당 48.75유로 소매가격의 49.7%(1,000개비당 최소 210유로 징수)
시가	종량세 증가세	1,000개비당 19유로 소매가격의 23%(1,000개비당 최소 92유로 징수)
말아 피는 담배(미세 절단담배)	종량세 증가세	1kg당 67.5유로 소매가격의 37.7%(1kg당 167유로)
기타 흡연담배	종량세 증가세	1kg당 17유로 소매가격의 45%(1kg당 70유로)
코담배	증가세	소매가격의 50%
씹는담배	증가세	소매가격의 35%

출처: 프랑스 법령정보, Code général des impôts § 575,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jsessionid=ECC63359C8F49673BA3ACC46E2BC10FA.tpdila12v_3?idArticle=LEGIARTI000033713149&cidTexte=LEGITEXT000006069577&categorieLien=id&dateTexte=, (접속일: 2017.6.15.)
 및 European Commission, EXCISE DUTY TABLES(2017)

2) 전자담배 과세

- 니코틴을 함유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을 의약품으로 규제하고 있어, 니코틴 액상을 이용한 전자담배는 실질적으로 판매 금지되어 있음⁵²⁾

51) Code général des impôts §564

52) 프랑스 소비세관,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0948-regime-fiscal-et-economique-des-tabacs>, (접속일: 2017.6.8.)

- 담뱃세법에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가열식 전자담배의 정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2007년 5월경에 출시되었으며, 20개비 히츠(HEETs) 담배의 소매가격은 7유로임⁵³⁾

라. 영국

1) 일반담배 과세

- 영국에서는 담배에 대한 과세를 국세인 소비세(Excise Duty)로 부과하고, 종가세 또는 종량세 방식이 혼합되어 있으며, 담배도 종류별로 나눠 분류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담배 종류를 담배(Cigarettes), 시가, 말아피는 담배, 기타 담배 및 씹는 담배로 분류함
 - 일반 담배(Cigarettes)는 소매가격의 16.5%를 부과하는 종가세와 1,000개비당 207.99파운드를 부과하는 종량세를 합산하여 과세함
 - 또한 2017년 5월 20일부터는 최소 소비세가 도입되어 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가 1,000개비당 최소 268.63파운드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 영국 국세청은 최소 소비세 도입에 따라 값싼 담배를 많이 피우는 납세자가 높은 세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Exchequer impact)이나 거시 경제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함⁵⁴⁾
 - 시가, 말아피는 담배, 기타 담배 등은 무게를 기준으로 한 종량세로 부과하며, 최소 소비세 대상에서는 제외됨

53) 프랑스 법령정보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0199480&fastPos=2&fastReqId=1969213551&categorieLien=id&oldAction=rechTexte>, (접속일: 2017.6.8.)

54)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minimum-excise-tax-for-cigarettes/minimum-excise-tax-for-cigarettes>, (접속일: 2017. 6. 16)

〈표 III-6〉 영국의 담배에 대한 소비세율

종류	세율		세율 인상분	최소 소비세(Minimum Excise Tax) 도입
	2016.3.16~	2017.3.8.~		2017.5.20.~
담배 (Cigarettes)	소매가의 16.5% + 1,000개비 £196.42	소매가의 16.5% + 1,000개비당 £207.99	1갑(20개비)당 35 pence 상승	MAX(①, ②) ① 소매가의 16.5% + 1,000개비 당 £207.99 ② 1,000개비 당 £268.63
시가(Cigars)	£245.01/kg	£259.44/kg	10g당 17 pence 상승	£259.44/kg
말아피는 담배	£198.10/kg	£209.77/kg	30g당 42 pence 상승	£209.77/kg
기타 담배 및 씹는 담배	£107.71/kg	£114.06/kg	30g당 23 pence 상승	£114.06/kg

출처: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excise-duty-tobacco-duty/excise-duty-tobacco-duty-rates>. (접속일: 2017. 6. 16)

2) 전자담배 과세

- 영국에서는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도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담배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임⁵⁵⁾
 - 영국에서 전자담배는 소비재로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반면, 의약품으로 규제될 경우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영국은 가열식 담배(Heated Tobacco)를 전자담배의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담배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⁵⁶⁾
 - 현재 가열식 담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존 쉐던 담배 같이 연소하는 방식이 아닌 가열하여 증기를 생산하는 담배를 가리키며, 가열식 담배에는 담배(tobacco)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전자담배(e-cigarettes)와 구분함

55) 세계담배통제협회 홈페이지, <http://globaltobaccocontrol.org/e-cigarette>, (접속일: 2017. 6. 8)

56)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ax-treatment-of-heated-tobacco-products/tax-treatment-of-heated-tobacco-products>, (접속일: 2017. 6. 8)

- 영국 정부는 가열식 담배에 대한 정의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기 위해 서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상품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가열식 담배 제품을 포괄해야 하며, 현재 3가지 유형의 가열식 담배 제품을 파악하고 있음⁵⁷⁾
- 또한 가열식 담배는 일반 담배, 시가, 손으로 말아피는 담배, 씹는 담배가 아니어야 하며, 담배(tobacco)를 포함하고, 증기를 생산하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설명함

마. 미국

1) 일반담배 과세

- 미국에서는 담배 제품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담뱃세를 부과하며, 일부 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담뱃세를 부과하기도 함
 - 연방정부의 담배소비세는 제품별로 수량 또는 무게에 따른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시가는 판매가격에 따라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 형태로 부과함
 - 주정부에서 담배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는 각 주별로 다양한 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일반담배는 1갑 당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종량세 형태이지만 시가 등 일부 담배는 종가세로 부과함
- 미국 연방정부는 담배를 일반 담배, 시가, 파이프 담배, 씹는 담배, 코담배(snuff), 말아 피는 담배 등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음
 - 소형 담배 및 시가는 1,000개비당 50.33달러를 부과하며 대형 담배는 1,000개비당 105.69달러를, 대형 시가는 판매가의 52.75%를 부과하지만 최대 1,000개비당 402.6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음

57) 영국 정부에서는 3가지 유형의 가열식 담배 제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① processed tobacco heated directly to produce vapour ② processed tobacco designed to be heated in a vaporiser ③ devices that produce vapour from non-tobacco sources, where the vapour is then passed over processed tobacco in order to flavour the vapour

- 기타 담배도 무게에 따른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단순히 무게 대비 세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말아피는 담배, 파이프 담배, 코담배, 씹는 담배 순으로 세율이 부과되고 있음

〈표 III-7〉 미국 연방정부의 담배에 대한 소비세

(단위: 달러)

종류	세율
소형 담배 ¹⁾	50.33 / 1,000개비
대형 담배 ²⁾	105.69 / 1,000개비
작은 시가 ¹⁾	50.33 / 1,000개비
대형 시가 ²⁾	판매가의 52.75%(MAX \$402.60 / 1,000개비)
파이프 담배	2.8311 / 1 lb.
씹는 담배	0.5033 / 1 lb.
코담배(snuff)	1.51 / 1 lb.
말아 피는 담배	24.78 / 1 lb.
담배용 종이	0.0315 / 50장
담배용 튜브	0.0630 / 50튜브

주: 1) 소형 담배 및 시가는 1,000개비당 3파운드를 넘지 않는 제품을 말함

2) 대형 담배 및 시가는 1,000개비당 3파운드를 넘는 제품을 말함

출처: 미국주류담배세금무역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홈페이지, https://www.ttb.gov/tax_audit/alltaxes.shtml, (접속일: 2017. 6. 16)

- 미국 주정부 단위에서 부과하는 소비세는 주별로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담배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표 III-8〉은 일반담배에 대한 주별 소비세를 정리한 것으로 일반담배에 가장 높은 세금이 적용되는 주는 뉴욕 주로 435달러가 부과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세금은 미주리 주의 17달러임
 - 미국 주정부의 담배에 대한 소비세 평균은 164달러이며, 중간값은 26번째로 높은 세율을 가진 사우스다코타 주의 153달러로 나타남

〈표 III-8〉 미국 주정부의 담배에 대한 소비세

(단위: ¢/한 갑)

주	세금	순위	주	세금	순위
Alabama	67.5	40	Nebraska	64	41
Alaska	200	13	Nevada	180	19
Arizona	200	13	New Hampshire	178	20
Arkansas	115	33	New Jersey	270	9
California	87	37	New Mexico	166	23
Colorado	84	38	New York	435	1
Connecticut	390	2	North Carolina	45	47
Delaware	160	24	North Dakota	44	48
Florida	133.9	29	Ohio	160	24
Georgia	37	49	Oklahoma	103	35
Hawaii	320	5	Oregon	132	30
Idaho	57	45	Pennsylvania	260	10
Illinois	198	18	Rhode Island	375	3
Indiana	99.5	36	South Carolina	57	45
Iowa	136	28	South Dakota	153	26
Kansas	129	31	Tennessee	62	42
Kentucky	60	43	Texas	141	27
Louisiana	108	34	Utah	170	21
Maine	200	13	Vermont	308	6
Maryland	200	13	Virginia	30	50
Massachusetts	351	4	Washington	302.5	8
Michigan	200	13	West Virginia	120	32
Minnesota	304	7	Wisconsin	252	11
Mississippi	68	39	Wyoming	60	43
Missouri	17	51	Dist. Of Columbia	250	12
Montana	170	21	중간값, 평균	153, 164	

출처: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홈페이지, <https://www.cdc.gov/statesystem/excisetax.html>,
(접속일: 2017. 6. 16)

2) 전자담배 과세

- 미국에서 전자담배가 유통 및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세규정이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일부 주정부에서만 과세 또는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임⁵⁸⁾
 - 미국은 2016년 1월 현재 4개의 주와 Columbia 특별구, 3개의 지역 관할권(local jurisdictions) 등 7개 주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존재함
 - 또한 2015년에 최소 23개 주에서 전자담배(vapor product)에 대한 소비세 부과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전자담배에 과세하고 있는 일부 주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 방식을 적용하며, 세율도 주마다 각각 다르게 부과하고 있음
 - 종가세를 부과하는 주는 컬럼비아, 미네소타, 메릴랜드로 각각 도매가의 70%, 95%, 30%의 세율을 적용함
 - 종량세로 부가하는 주는 캔자스,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일리노이임
 - 캔자스는 1ml당 0.2달러, 루이지애나는 1ml당 0.05달러, 노스캐롤라이나도 1ml당 0.05달러의 세율이 적용되며, 쿡 카운티, 일리노이는 1ml당 0.2달러, 시카고, 일리노이는 제품 한 단위당 0.8달러를 부과하고 1ml당 0.55달러를 추가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 밖에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주들은 종가세와 종량세의 방식을 동시에 채용하고 있으며, 세율도 각기 다르게 나타남
 - 종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려는 주는 대부분 도매가의 일정비율을 세율로 정하고 있으나 켄터키 주에서는 소매가에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함
 - 종량세의 과세방식을 취하려는 주는 1ml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메인 주는 니코틴 중량에 따라 세율을 측정하여 니코틴 18g당 2달러의 세금을 적용하고자 함

58)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taxfoundation.org/vapor-products-and-tax-policy/>, (접속일: 2017. 6. 16)

- 이처럼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액상형 전자담배로 불리는 제품에 대한 과세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열식 담배에 대한 과세규정도 아직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표 III-9〉 전자담배 관련 주별 소비세

관할권(주)	세율	해당 법(안)
제정된 주정부(Enacted)		
District of Columbia	도매가격의 70%	Bill 21-158 of 2015
Kansas	\$0.20/ml	HB 2109 of 2015
Louisiana	\$0.05/ml	HB 119 of 2015
Minnesota	도매가격의 95%	Revenue Notice #12-10 of 2012
North Carolina	\$0.05/ml	HB 1050 of 2014
Montgomery County, Maryland	도매가격의 30%	Bill 15-15 of 2015
Chicago, Illinois	\$0.80/unit + \$0.55/ml	City Budget of 2015
Cook County, Illinois	\$0.20/ml	County Budget of 2015
2015년 제정안(Proposed in 2015 Session)		
Alabama	\$0.25/ml	HB 224
Arizona	\$0.18/ml	HB 2596
Arkansas	\$0.075/ml	HB 1156
Florida	도매가격의 85%	Draft legislation
Hawaii	도매가격의 30%	SB 299
	도·소매가격의 10%	HB 748
	도매가격의 70%	HB 349
	도매가격의 80%	HB 1164
Indiana	\$0.0083/mg(액상 1ml당 니코틴 함유량) 도매가격의 24%	SB 384 HB 1235
Iowa	도매가격의 50%	HF 306
Kentucky	소매가격의 15%	HB 438
	도매가격의 40%	HB 132
Maine	\$2.00/18mg(니코틴)	HB 973
Montana	\$0.0173/mg(액상 1ml당 니코틴 함유량)	HB 579
Nevada	도매가격의 30%	SB 79
New Hampshire	도매가격의 73.94%	Budget proposal
New Jersey	도매가격의 30%	AB 4251
	도매가격의 75%	SB 1867
New Mexico	\$0.04/mg(니코틴)	SB 65
New York	도매가격의 75%	SB 722/AB 296
North Dakota	도매가격의 50%	SB 2322
Ohio	\$1.125/ml	Budget proposal
Oregon	도매가격의 65%	HB 2134
	81.25%	HB 3053
Pennsylvania	도매가격의 40%	Budget proposal
Rhode Island	도매가격의 80%	SB 463
Vermont	도매가격의 46%	SB 139
	도매가격의 92%	HB 233
Virginia	\$0.40/ml	HB 1310
	\$0.18/ml	SB 1004
Washington	도매가격의 95%	Budget proposal
	도매가격의 60%	HB 2211

출처: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taxfoundation.org/vapor-products-and-tax-policy/>, 접속일: 2017. 6. 16

바. 이탈리아

1) 일반담배 과세

- 이탈리아도 담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일반담배는 종량세와 증가세가 혼합된 방식으로, 시가나 말아피는 담배 등은 증가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⁵⁹⁾
 - 일반담배에는 1,000개비당 17.879유로의 종량세와 함께 판매가격의 51.03%의 증가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부과되어 증가세 형태로 69.06%의 세율이 부과됨
 - 종량세와 증가세에서 부담하는 세율과 부가가치세를 가중평균할 경우 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은 76.74%로 계산됨
 - 시가의 경우 판매가격의 23%의 세율이 적용되며, 말아피는 담배는 판매가격의 58.5%의 세율이 부과됨
 - 부가가치세까지 합산할 경우 시가는 판매가격의 41.03%를, 말아피는 담배는 76.53%의 세율이 부과됨

2) 전자담배 과세

- 이탈리아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2013년 증가세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법 적용이 잠시 중단되다가 2014년 12월 24일 「Legislative Decree 188」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어 현재까지 과세되고 있음
 - 2013년 처음 도입된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율은 소매가격의 58.5%였음
 - 2015년부터 부과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관세국(Director of Customs and Monopolies)에서 규정한 복잡한 공식을 바탕으로 산출됨
 -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가중평균가격(WAP)에 따라 달라지며, 이탈리아는 유럽연합의 소비세 지침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가중평균가격을 재계산하여 소비세율을 산정함

59) European Commission(2017), Excise Duty Tables - Part III: Manufactured Tobacco, pp.5-21 요약하여 정리

- 2015년에는 1ml당 0.37344유로로 책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1ml당 0.385유로, 현재는 1ml당 0.393유로임⁶⁰⁾
 -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최종 소매가의 2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부과됨
- 이탈리아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 세율은 일반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흡연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함⁶¹⁾
- 흡연시간은 관세국에서 규정한 기술절차에 따라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평균 소비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됨
 - 2015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5개의 서로 다른 브랜드의 일반담배를 5개의 샘플로 분류하고, 같은 흡연 환경과 2초간의 빠는 시간(puff duration)을 적용하여 각 샘플을 흡연하여 소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테스트함
 - 테스트 결과 일반 담배를 흡연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37.91초였음
 - 2015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액체물질로 구성된 전자담배에 대해 유사한 테스트가 수행되었으며, 니코틴이 포함된 액체 1ml를 흡연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평균 213.59초였음⁶²⁾
 - 분석 결과 1ml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를 흡연하는데 필요한 평균 시간보다 5.63배(213.59/37.91)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테스트 수행 시점(2015년 1월)에 일반 담배에 부과된 소비세의 가중평균 값은 1,000개비당 132.66유로였음
 - 흡연시간을 액상형 전자담배 1ml와 일반담배 1개비를 비교하였으므로 일반담배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5.63배로 세금을 산정함

60) 세계담배통제협회 홈페이지, <http://globaltobaccocontrol.org/e-cigarette/italy>, (접속일: 2017. 6. 8)

61) 증기담뱃세 홈페이지, <http://vaporproductstax.com/wp-content/uploads/2016/10/Determining-excise-rate-for-e-cigarettes-in-Italy-VPT.pdf>, (접속일: 2017. 6. 8)

62)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10개의 샘플들은 10·20·30 와트(watts)의 다른 효능(potencies)을 가진 3개의 전자 장치를 이용하였으며, 10개의 샘플은 니코틴 농도 4~18mg/ml의 범위에 있는 7개와 니코틴이 없는 3개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각 샘플은 2초씩 지속되는 40번의 빨기(puffs)로 분석하며, 실험은 중량측정법(gravimetric methods), 무게 감량측정법(depletion of weight)을 사용함

- 다만, 일반담배의 소비세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50%만큼 감액한 금액에 5.63배를 곱한 금액으로 세금을 매김
 - 따라서 액상형 전자담배 1ml당 세금은 0.37344유로($66.33/1000 \times 5.63$)로 계산됨
 - 2015년 1월 20일 관세국은 분석결과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소비세율을 발표함
- 이탈리아는 2014년 12월 24일 가열식 전자담배(heated tobacco)에 대해 「Legislative Decree 188」에 연소되지 않는 흡입 담배(inhalation tobacco without combustion)를 포함시켜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⁶³⁾
- 이탈리아는 가열식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담배 1kg의 평균가격에 가중치를 부여한 소비세 부담의 50%로 설정된 소비세를 부과함
 - 가중치는 관세국(Customs and Monopoly Agency)에서 5개 담배 브랜드의 평균소비시간과 해당 가열식 전자담배의 평균소비시간을 비교하여 결정한 것에 따름
 - 액상형 전자담배와 다른 점은 5개 샘플 담배와 평균소비시간을 비교하여 산출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 세율은 모든 브랜드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면, 가열식 담배는 제품마다 다르게 적용됨
 - 필립모리스의 iQOS 제품의 경우 말보로 에센스(Marlboro Essence)와 말보로 밸런스(Marlboro Balance)가 20개비 1갑당 소비세는 각각 1,2016유로, 1,2032유로가 부과됨
 -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가열식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율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음

63) 증기담뱃세 홈페이지, <https://vaporproductstax.com/>, (접속일: 2017. 6. 8)

IV. 주요 쟁점사항별 국제비교

1. 담배 과세대상

가. 담배의 종류

- 조사대상 국가의 담배 과세대상 분류 기준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담배를 쫄면, 시가, 파이프담배(또는 말아피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코담배) 등으로 분류하며, 최근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국가는 주요국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크게 흡연용 담배(쫄면, 파이프담배 등),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분류 기준을 갖고 있음
 - 호주는 쫄면, 시가, 파이프용 담배로 구분하며, 이탈리아도 유사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 프랑스도 쫄면, 시가, 마는 담배, 기타 흡연담배, 코담배, 씹는 담배로 분류하며, 영국도 쫄면, 시가, 말아피는 담배, 기타 담배 및 씹는 담배로 분류함
 - 미국도 담배, 시가, 파이프 담배, 씹는 담배, 코담배, 말아피는 담배로 구분하며, 담배와 시가는 1,000개비당 3파운드라는 무게를 기준으로 작은 담배·시가, 큰 담배·시가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나. 전자담배 정의 규정

- 조사대상 국가의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을 연소가 아닌 방식으로 증기를 만들어 흡입하는 제품 및 여기에 사용되는 물질(주로 니코틴이 함유된 액체)로 보고 있음

- EU는 카트리지와 탱크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니코틴을 포함한 증기를 흡입하는 제품으로 1회용제품 및 리필가능제품을 모두 포함함
- WHO는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제품을 전자담배로 봄
- 미국은 배터리로 작동하며, 니코틴을 포함한 화학물질을 연무형태로 흡입하는 장치로 보며, 이탈리아는 액체 물질로 구성된 연소하지 않는 흡입용 담배제품을 전자담배로 보고 있음
- 우리나라는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⁶⁴에서 담배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증기로 흡입하거나”에 해당하는 담배로 볼 수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이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제5호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임

□ 가열식 전자담배는 국가별로 정의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 특히 EU에 속한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연소(burn)되지 않고, 가열(heat)시켜 증기를 만들어 흡입하는 담배(tobacco)로 보고 있음

2. 일반 담배의 과세제도 비교

- 대부분의 국가는 담배를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세율도 각각 다르게 부과하고 있었으나 일본은 담배 종류는 구분하지만 세율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었음
- 일본은 쥘련, 시가, 파이프담배, 씹는 담배, 코담배 등으로 담배를 구분하지만 세율은 1,000개비당 12,244엔을 기준으로 부과함
 - 다만, 파이프 담배 및 시가 담배는 1g을 1개로, 씹는 담배와 코담배는 2g을 1개로 각각 환산함

64)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프랑스는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한 방식으로 담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켈련을 다른 담배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영국은 켈련만 종가세와 종량세가 혼합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종류의 담배는 종량세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음
- 미국의 연방정부는 큰 시가(large cigar)만 종가세 방식으로 소비세를 부과하며, 켈련 및 기타 담배는 개비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함

〈표 IV-1〉 주요 국가의 담배 과세제도 비교

구분	켈련 (Cigarette)		시가		파이프담배	씹는담배	코담배 (snuff)	화폐 단위
일본	12,244 (1,000개비)		12,244 (1,000개비)		12,244 (1,000개비)	12,244 (1,000개비)	12,244 (1,000개비)	엔
프랑스	48.75(1,000개비) + 소매가격의 49.7%		19(1,000개비) + 소매가격의 23%		67.5 (1kg)	소매가격의 35%	소매가격의 50%	유로
영국	207.99(1,000개비) + 소매가격의 16.5%		259.44 (1kg)		209.77 (1kg)	114.06 (1kg)	-	유로
미국1) (연방정부)	소형담배	50.33 (1,000개비)	소형	50.33 (1,000개비)	2,8311 (1 lb)	0,5033 (1 lb)	1,51 (1 lb)	달러
	대형담배	105.69 (1,000개비)	대형	판매가격의 52.75%				

주: 1)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율만을 가지고 비교한 것으로 주정부별 담배 세율 등은 고려하지 않음
출처: 본 보고서 제Ⅲ 장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켈련형 전자담배의 과세제도 비교

- 켈련형 전자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이후에 개발된 형태로 현재 유통 및 판매되는 국가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규정이 마련된 국가도 거의 없음

- 다만, 껴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되어 기존 껴련 시장의 점유율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일본을 비롯하여 기존에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들이 껴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음
- 일본은 담배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만 껴련형 전자담배는 껴련이 아닌 파이프담배로 보아 개비가 아닌 1g당 12,244엔으로 부과함
 - 다만, 잎담배 뿐만 아니라 필터, 캡슐 등을 포함한 중량으로 과세하고 있음
- 영국은 가열식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도구로 권장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다른 형태인 일반적인 담배 중 하나의 형태로 보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정의 및 과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적용한 세율 산출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모든 제품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달리 가열식 전자담배는 제품마다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율을 해당 제품에만 적용하므로 제품별 세율이 각각 다름

〈표 IV-2〉 주요 국가의 껴련과 껴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비교

구분	적용되는 세율	
	껴련	껴련형 전자담배
일본	244,88엔	1g=1개비 - 세율 부과단위는 g임(껴련은 개비로 부과함) - 필터, 캡슐 등을 포함한 중량으로 과세
영국	판매가격의 16.5% + 20개비당 4.1598파운드	도입과정에 있음
이탈리아	판매가격의 51.03% + 20개비당 0.35758유로	제품마다 다름 - 필립모리스의 IQOS: 말보로 에센스 (1.2016유로/20개비), 말보로 밸런스 (1.2032유로)

출처: 본 보고서 제3장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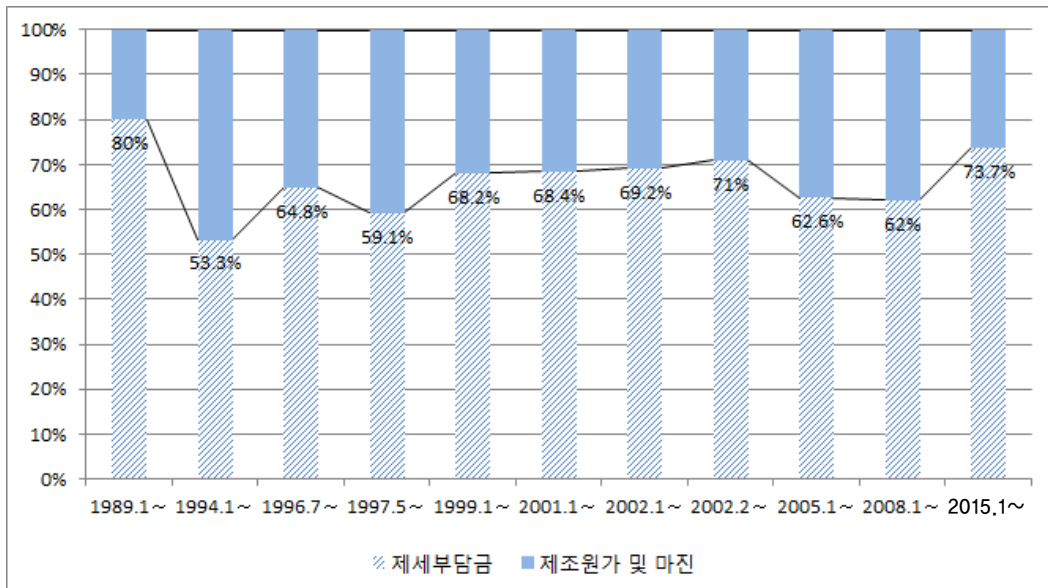
4. 과세방안별 세부담 비교

가. 일반담배 세부담 비교

- 우리나라의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비율을 쉐련 기준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에는 80%의 높은 비율로 과세했지만 1994년 53.3%로 급격히 낮아진 이후에는 60%대에서 오르내림을 거듭함
- 2008년 이후에는 제세부담금 비율이 62% 수준이었으나 정부의 금연정책에 따라 2015년부터는 모든 담배에 부과하는 세율을 인상하고, 개별소비세도 추가로 과세하여 제세부담금 비율이 73.7%로 급등함
 - 담배에 부과하는 제세부담금 인상 및 개별소비세 적용에 따라 담배가격은 20개비 쉐련 기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크게 인상됨

[그림 IV-1] 우리나라 쉐련의 제세부담금 변화 추이

(단위: %)



출처: 본 보고서 (표 II-5)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단위: %)

- 금연정책 등의 목적에 따라 제세부담금 비중을 높였으나 OECD 국가 등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경우 여전히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보임

- OECD가 발간한 「Consumption Tax Trend 2016」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쉐련 20개비 기준 담배가격은 OECD 국가 중 32위에 해당하며, 제세부담금 비중은 73.74%로 높아졌으나 OECD 국가 중에는 26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담배가격과 제세부담금 비중을 곱하여 실제 세부담을 계산해 본 결과 한국은 쉐련 20개비당 2.49달러를 부담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32위에 위치하고 있음

- OECD 국가의 담배가격 평균은 6.14달러로 우리나라 3.38달러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제세부담금 비중 평균은 74.86%로 나타남⁶⁵⁾
 - 담배 1갑(20개비) 구매 시 부담하는 제세부담금은 2.49달러로 OECD 평균 4.53달러보다도 2.04달러나 부담수준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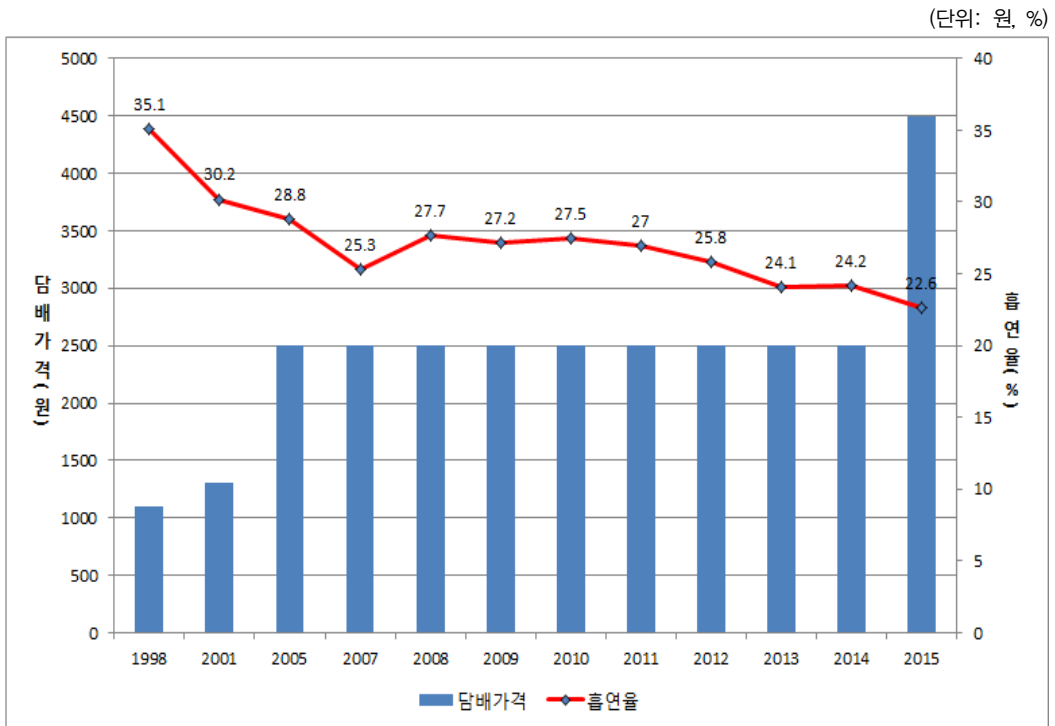
- 담배가격과 흡연율의 상관관계를 직접 분석하지는 못했으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단순한 추이를 살펴보면 흡연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담배가격이 인상되는 연도에 다른 기간보다 흡연율 감소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가격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양한 규제, 사회적 현상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담배가격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민진 외(2014)는 담배규제 정책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담배규제와 관련하여 담배가격 인상, 담배제품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공공장소 실내금연 확대에 대한 주제가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 나타남⁶⁶⁾

65) 본 보고서 제Ⅲ장의 <표 Ⅲ-2> 참고

66) 이민진, 임성원, 이성규, 조홍준(2014), pp. 171~173

- 담배가격 인상과 흡연 감소 효과를 분석한 최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시행된 담배가격 인상 정책으로 인상 전보다 전체 흡연자의 일평균 흡연량이 약 3.601개비만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⁶⁷⁾
 - 또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상·중·하위 흡연자 집단의 일평균 흡연량은 각각 3.284, 3.335, 4.225개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다만, 본 연구는 단기적 측면에서 정책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흡연량 감소가 이미 흡연 감소 추세 효과 진행에 따른 것이며, 담배가격 인상 정책의 효과는 일부분만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그림 IV-2] 담배 판매가격과 흡연율



출처: 국가 주요지표 홈페이지(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038)의 「흡연율(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접속일: 2017. 6. 14)

67) 김영직·정기덕·조민효(2017), pp.44~45 내용을 요약함

나. 쉐련형 전자담배 세부담 비교

- 최근 쉐련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연소가 아닌 가열방식으로 증기를 흡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쉐련형 전자담배가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세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원발의 입법안(박남춘, 박인숙, 김영진 의원)을 바탕으로 제세부담금 부담 비중을 분석해 봄
 - <표 IV-3>의 ②안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 고품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는 연초 고품물 기준이 없어 파이프 담배 기준으로 과세하기에 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이 경우 판매가격 대비 제세부담금 비중은 40.45%로 계산됨
 - 같은 표의 ③안은 연초 고품물에 대한 박남춘 의원의 개별소비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개별소비세가 126원에서 306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제세부담금 비중은 44.63%로 높아짐
 - ④안은 쉐련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개정안(박인숙 의원)이 개별소비세만 반영된다고 가정한 것으로 이 경우 개별소비세가 594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은 대략 51.33%로 나타남
 - 현재 쉐련형 전자담배를 쉐련과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 보아 쉐련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박인숙 의원(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과 김영진 의원(지방세법)에 의해 발의되었기에 ⑤안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 쉐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때를 가정한
 - 이 경우 판매가격(4,300원)의 76.75%가 제세부담금으로 부과됨
- 또한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방안에 따라 쉐련과 제세부담금, 출고가 및 유통마진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례별로 분석함
 - 사례 I 은 쉐련과 ②안을 비교한 것으로 현재와 같이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연초 고품물로, 개별소비세를 파이프 담배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쉐련보다 제세부담금은 1,578원 덜 내며,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1,378원 많음

- 개별소비세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중인 개정안을 반영할 경우 궤련과 가열식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출고가 및 유통마진의 차이는 줄어들며, 모든 제세 부담금에 궤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경우 가열식 전자담배의 출고가 및 유통마진이 182원 정도 감소함
 - 사례 Ⅱ는 궤련과 ③안을 비교한 것으로 궤련보다 개별소비세는 288원 적게 부담하며, 총제세부담금은 1,398.7원 적게 내고,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1,198.7원 많았음
 - 사례 Ⅲ은 궤련과 ④안을 같은 방식으로 비교했으며, 개별소비세는 궤련과 동일하지만 다른 제세부담금에서 차이가 나 총 1,110.7원을 적게 부담하며,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910.7원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례 Ⅳ는 궤련과 ⑤안을 비교한 것으로 궤련과 동일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기에 부가가치세 부담에서만 일부 차이가 나며, 가열식 전자담배의 현재 판매가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출고가 및 유통마진은 궤련이 182.3원 많은 것으로 계산됨
- 다만, 세부담을 계산함에 있어 현재 국내에는 가열식 전자담배가 하나의 제품만 출시되어 판매되기에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표 IV-3〉 권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과세방안별로 비교

구분	2015년 이전 (일단담배)	인상 후 (일단담배) / ①	연초고형물로 볼 경우			연초 및 연초 가공물을 사용하는 권련 / ⑤	사례 I ① - ②	사례 II ① - ③	사례 III ① - ④	사례 IV ① - ⑤
			현재 (개별소비세: 파이프담배) / ②	개별소비세 (박남준 의원안) / ③	개별소비세 (박인숙 의원안) / ④					
출고가 및 유통마진	950 (38) ¹⁾	1,182 (26.27)	2,560.7 (59.55)	2,380.7 (55.37)	2,092.7 (48.67)	999.7 (23.25)	-1,378.7 (-33.28)	-1,198.7 (-29.10)	-910.7 (-22.40)	182.3 (3.02)
담배소비세	641 (25.64)	1,007 (22.38)	528 (12.28)	528 (12.28)	528 (12.28)	1,007.0 (23.42)	479.0 (10.10)	479.0 (10.10)	479.0 (10.10)	0.0 (-1.04)
지방교육세	321 (12.84)	443 (9.84)	232 (5.4)	232 (5.4)	232 (5.4)	443.0 (10.3)	211.0 (4.45)	211.0 (4.45)	211.0 (4.45)	0.0 (-0.46)
건강진부담금	354 (14.16)	841 (18.69)	438 (10.19)	438 (10.19)	438 (10.19)	841.0 (19.56)	403.0 (8.50)	403.0 (8.50)	403.0 (8.50)	0.0 (-0.87)
개별소비세	-	594 (13.20)	126 (2.93)	306 (7.12)	594 (13.81)	594.0 (13.81)	468.0 (10.27)	288.0 (6.08)	0.0 (-0.61)	0.0 (-0.61)
폐기물부담금	7 (0.28)	24.4 (0.54)	24.4 (0.57)	24.4 (0.57)	24.4 (0.57)	24.4 (0.57)	0.0 (-0.03)	0.0 (-0.03)	0.0 (-0.03)	0.0 (-0.03)
VAT 등	227.27 (9.09)	409.09 (9.09)	390.9 (9.09)	390.9 (9.09)	390.9 (9.09)	390.9 (9.09)	18.2 (0.00)	18.2 (0.00)	18.2 (0.00)	18.2 (0.00)
계	1,550 (62)	3,318 (73.73)	1,739.3 (40.45)	1,919.3 (44.63)	2,207.3 (51.33)	3,300.3 (76.75)	1,578.7 (33.28)	1,398.7 (29.10)	1,110.7 (22.40)	17.7 (-3.02)
판매가격	2,500	4,500	4,300 ³⁾	4,300	4,300	4,300	200.0 (0.00)	200.0 (0.00)	200.0 (0.00)	200.0 (0.00)

주: 1) 가형식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건강진부담금, 개별소비세는 1건(20개비)의 무게가 6g이라 가정(일반 권련형 담배는 11.488g)하여 계산한 결과임

1. 괄호 안의 비율은 판매가격 대비 항목별 비율을 나타냄

2. 가형식 담배의 판매가격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2017년 6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필립모리스의 '히츠' 라는 담배제품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음

출처: 법안의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쉐련형 전자담배가 기존 쉐련을 대신하는 대체재로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될 경우, 쉐련형 전자담배가 부담하는 제세부담금 수준에 따라 세수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쉐련형 전자담배가 쉐련보다 유해성도 낮고, 금연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세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식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쉐련을 대체하는 제품일 경우 쉐련보다 낮은 세부담은 세수 감소만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앞서 살펴본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방안별 쉐련과의 세부담 차이를 기준으로 쉐련형 전자담배가 담배시장에서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점유율을 0.1~10%까지로 가정했을 때 세수변화를 단순하게 예측해 봄
 - 아래 표에 제시된 사례 I~사례 IV는 앞의 <표 IV-3>에서 제시한 쉐련과 쉐련형 전자담배의 과세방안별 세부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며, 시장 점유율은 쉐련형 전자담배가 담배시장 전체에서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유율을 가정한 것임
 - 다만, 실제로는 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가 기존 쉐련의 소비를 100% 대체했다고 볼 수 없으나 계산의 편의 및 예측의 어려움 때문에 아래의 표는 쉐련형 전자담배가 쉐련을 100% 대체했다고 가정하여 계산함
 - 전체 담배 판매량은 2015년 기준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에 제시된 판매량 30억 5,877만갑(담배소비세 3조 441억원)을 기준⁶⁸⁾으로 하였으며, 쉐련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전체 담배 판매량에 시장점유율을 곱한 값으로 가정하여 구함
 - 따라서 세수변화는 '시장점유율별 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 × 사례별 세수차이(부족) = 세수변화'의 식으로 계산함

68) Kosis 홈페이지, 「담배소비세 담배급별 과세현황(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07_A721&conn_path=I3, (접속일: 2017. 6. 21)

- 분석 결과, 켈련형 전자담배가 전체 담배시장에서 0.1%의 점유율을 차지할 경우 34~48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10% 점유율을 차지한다면 3,397~4,828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켈련형 전자담배를 연초 고품질 전자담배(담배소비세 및 건강증진부담금)와 파이프담배(개별소비세)로 볼 경우, 시장점유율에 따라 적게는 48억원에서 많게는 4,828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
 - 반면, 켈련과 동일하게 볼 경우에는 다른 세목 및 부담금에서의 세수감소는 없으며, 판매가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 증감분만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사례 I~사례 III은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파이프 담배, 연초 고품질 전자담배(박남춘 의원안), 켈련(박인숙, 김광립 의원안)과 각각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여 세수 변화를 살펴본 것임
 - 시장점유율에 따라 파이프 담배로 볼 경우 14~1,431억원, 연초 고품질 전자담배로 볼 경우 8~880억원의 개별소비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켈련으로 볼 경우 세수 변화는 없음

〈표 IV-4〉 결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시나리오별 세수 변화

(단위: 억원)

시장 점유율	세목 및 부담금	사례 I	사례 II	사례 III	사례 IV
0.1%	전체	48,289	42,783	33,974	0,541
	담배소비세	14,652	14,652	14,652	0
	지방교육세	6,454	6,454	6,454	0
	건강증진부담금	12,327	12,327	12,327	0
	개별소비세	14,315	8,809	0	0
0.5%	전체	241,445	213,916	169,869	2,707
	담배소비세	73,258	73,258	73,258	0
	지방교육세	32,270	32,270	32,270	0
	건강증진부담금	61,634	61,634	61,634	0
	개별소비세	71,575	44,046	0	0
1%	전체	482,889	427,831	339,738	5,414
	담배소비세	146,515	146,515	146,515	0
	지방교육세	64,540	64,540	64,540	0
	건강증진부담금	123,269	123,269	123,269	0
	개별소비세	143,151	88,093	0	0
3%	전체	1,448,667	1,283,493	1,019,215	16,242
	담배소비세	439,546	439,546	439,546	0
	지방교육세	193,621	193,621	193,621	0
	건강증진부담금	369,806	369,806	369,806	0
	개별소비세	429,452	264,278	0	0
5%	전체	2,414,446	2,139,156	1,698,692	27,070
	담배소비세	732,577	732,577	732,577	0
	지방교육세	322,701	322,701	322,701	0
	건강증진부담금	616,344	616,344	616,344	0
	개별소비세	715,754	440,464	0	0
7%	전체	3,380,224	2,994,818	2,378,169	37,898
	담배소비세	1,025,608	1,025,608	1,025,608	0
	지방교육세	451,781	451,781	451,781	0
	건강증진부담금	862,881	862,881	862,881	0
	개별소비세	1,002,055	616,649	0	0
10%	전체	4,828,891	4,278,311	3,397,384	54,140
	담배소비세	1,465,154	1,465,154	1,465,154	0
	지방교육세	645,402	645,402	645,402	0
	건강증진부담금	1,232,687	1,232,687	1,232,687	0
	개별소비세	1,431,508	880,928	0	0

출처: 저자 작성

V. 결론

1. 담배 과세체계 전반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담배를 피는 방법 등 종류별로 세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최근 새로운 형태의 담배들이 출시되면서 담배 과세방법과 세율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담배 과세대상을 쥘련, 시가, 파이프 담배 등으로 구분하고 세율을 다르게 설정하여 부과하고 있었으나 최근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출시되면서 이에 대한 과세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도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통 및 판매됨에 따라 「지방세법」 등 제세부담금 부과규정에 전자담배의 정의 및 과세근거를 신설하였지만 최근 쥘련형 전자담배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담배의 정의 및 과세근거를 다시 개정해야 할 상황에 있음
 - 이는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로 현재 새로운 형태의 전자담배에 맞춰 과세근거를 마련한 국가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오래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국가가 대다수임

- 따라서 현재 지방세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담배 종류와 정의를 재검토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출시될 수 있는 신종담배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담배 종류별 정의를 새롭게 개정할 경우, 이에 따라 세율도 적정하게 조정해야 할 것임
 - 현재 일본은 담배의 종류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구분하고 있으나, 담배의 세율은 동일하게 과세하고, 과세단위가 개비 및 무게(g)로 차이를 두고 있음

- 다만, 새로운 담배가 출시될 경우 기존에 분류하고 있는 담배 중 하나에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관된 운영과 금연 등의 정책적 대응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 현재 담배소비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목인 담배소비세(특별·광역시세, 시·군세)와 지방교육세(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이 있음
- 이처럼 제세부담금 부과규정이 다양하여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하기는 어렵겠지만, 과세대상 및 세율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임시합의기구 등을 통해 일률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현재의 담뱃세율 체계는 개비 또는 무게를 기준으로 한 종량세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종가세를 혼합하여 과세하는 방안과 함께 물가에 연동해서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켈런을 기준으로 할 경우,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현재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합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 종량세 및 종가세 방식이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과세하여 서로의 단점을 상쇄하고 있음
 - 또한 많은 국가에서 최소 소비세를 도입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연구의 제Ⅲ장 <표 Ⅲ-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담배 가격과 세부담 비중’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32위를 기록하고 있어 담배의 세부담은 아주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도 켈런 등 많이 소비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종량세와 함께 종가세를 같이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제세부담금을 새롭게 개정하기 어려울 경우 개별소비세 또는 지방소비세 등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 중 일부만 종가세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호주는 담배소비세를 물가상승률과 매년 연동하여 그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적극적인 담배소비억제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 현재 담배 관련 소비세 과세대상은 열거주의이므로 새로운 유형의 신종 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규정을 다시 제정해야 하고, 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도 외국보다 많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담배 제세부담금과 관련된 법 개정 시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담배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담배의 종류별 과세대상 조정과 세율 등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담배의 정의 및 분류를 단순화하고 세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담배 과세체계의 장기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함

2.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

- 단기적으로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이어 궐련형(가열식) 전자담배가 판매되는 등 신종 전자담배가 계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관련 담배의 정의 및 세율에 대한 명확한 과세근거를 마련해야 함
- 최근 담배를 연소하는 것이 아닌 가열하는 방식으로 증기를 발생시켜 흡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판매되면서 해당 담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과세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음
 -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과 유사하지만 연소(burn)가 아닌 가열(heat)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흡입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를 궐련과 유사한 형태로 취급할지 아니면 인체에 덜 유해한 전자담배의 일종으로 분류할지 논란이 되고 있음
 - 궐련형 전자담배를 궐련과 동일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은 궐련형 담배가 모양뿐만 아니라 담뱃잎을 사용하기 때문에 궐련과 유사하다는 주장임

- 반면, 궤련이 아닌 전자담배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은 궤련형 전자담배가 궤련과 같이 연소방식이 아닌 열을 가해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전자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음

- 이러한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금연 정책과 연계하여 궤련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완재에 불과할지를 판단하여 이에 맞는 방향으로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음
 - 궤련형 전자담배가 유해성이 적고 증기 발생도 적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불경제 효과도 작다고 판단되고, 궤련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궤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무연담배라고 볼 수 있는 씹거나 머금은 담배는 연기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간접흡연의 유해성은 없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담뱃잎을 찌서 증기를 흡인하는 궤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증 외에 공식적인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담배의 일종임
 - 반면, 궤련형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기구 등의 역할로 기존 궤련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고, 단순히 보완재로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궤련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할 수도 있음
 -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궤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나 대체재로 기능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해야 하지만 현재 누적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즉,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문제는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제조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에 비례하여 과세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압축할 수 있음
 - 궤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검증은 현재 식약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궤련형 전자담배가 인체에 전혀 무해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은 상대적인 유해성에 대한 검사임

- 만일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근거로 세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1회 흡연시 나오는 유해물질의 배출 또는 흡수가 일반 담배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흡연자들이 흡연 횟수를 오히려 늘릴 수 있음
 - 또한 동일한 양의 유해물질이 개인별 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세율을 전자담배의 건강에 대한 유해성 정도에 따라 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유해성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해외 사례도 없음
 - 따라서 식약청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음
-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현행 정책목표임을 감안할 때,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함
- 다만 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에 대한 논란과 연기와 냄새가 거의 없는 등 간접흡연의 상대적 위험감소 등과 별도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⁶⁹⁾를 참고로 한다면 일반 담배의 80~100%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함
 - 현재와 같이 일반담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현재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파이프 담배에 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파이프 담배에 준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음
-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담배 종류와 정의 등을 재검토하여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새로운 유형의 담배 제품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69) 일반담배 대비 81.6%의 세금 비중

- 담배의 구분은 담배의 성질과 모양, 원료,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새롭게 정의하되, 가급적 분류를 최소화하고 세율 및 과세체계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만약 개별소비세 과세기준이 마련되어 적정 수준으로 세율이 확정되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의 세율도 그 부담수준에 따라 함께 개정해야할 것임

참고문헌

〈국내문헌〉

- 관세청 보도자료, 「2015년 담배 수입 동향」, 2016.1.28., p.1.
-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9.15.
-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의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017.2, p.3.
- 김영직·정기덕·조민효,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의 흡연 감소 효과: 가치분소득 분위별 흡연 감소효과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보건사회연구』 제 27권 제4호, 2017. 2.
- 보건복지부,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안내」, 2012.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 2, pp.45~48.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6. 12, p.5.
- 이민진, 임성원, 이성규, 조홍준, 「담배규제 정책 쟁점별 국내 연구 현황 분석」 보건사회연구, 34(3), pp.165-1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9.
- 최성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최성은, 「전자담배 관리방안 및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한국소비자원, 「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 2015. 4, 한국소비자원, 「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 2015. 4, p.1.
- 현진권·성명재, 「소비세제도의 변천과정」, 『한국세제사-소비과세·관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12, pp.158~163.
- 법제처, 법령해석, 「전자담배도 담배일까?」, 법제처 보도자료, 2008. 11.
- 법제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유(공포번호 제14692호)

〈해외 문헌〉

- 일본 담배산업주식회사, 「Fact Sheets」, 2016.
- 田中 謙, 「電子タバコ・無煙タバコ規制の法システムと今後の法制的課題」, 『法學論集』 第66卷 第1号, 關西大學, 2016, p.5.

European Commission, Excise Duty Tables - PartⅢ: Manufactured Tobacco, 2017, pp.5~21.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6, pp.142~145.

〈웹사이트 자료〉

국가 주요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4038, (접속일: 2017. 6. 14)

국가 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07_A721&conn_path=I3, (접속일: 2017. 6. 2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접속일: 2017. 5. 1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개별소비세법」 조문별(제1조) 연혁 설명 참조,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접속일: 2017. 6. 15)

국세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증진법」 조문별(제23조) 연혁 설명 참조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Tax.jsp?gubun=1>, (접속일: 2017. 6. 15)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14.9.15.),

http://www.mosf.go.kr/lw/lap/detailTbPrvntcView.do?menuNo=7040000&searchNttId1=OLD_409176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55, (접속일: 2017. 5. 30)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taxfoundation.org/vapor-products-and-tax-policy/>, (접속일: 2016. 6. 16)

미국 주류담배세금무역국 홈페이지,

https://www.ttb.gov/tax_audit/atftaxes.shtml, (접속일: 2017. 6. 16)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홈페이지,

<https://www.cdc.gov/statesystem/excisetax.html>, (접속일: 2016. 6. 16)

법제처,

<http://www.moleg.go.kr/knowledge/publication/monthlyPublicationSrch.jsp?mpbLegPstSeq=127940>, (접속일: 2017.6.15.)

삼일아이닷컴 예규판례 사이트,

<http://www.samili.com/tax/YeguPanreSearch.asp>, (접속일: 2017. 5. 25)

세계담배통제협회 홈페이지,

<http://globaltobaccocontrol.org/e-cigarette>, (접속일: 2017. 6. 8)

세계담배통제협회 홈페이지,

<http://globaltobaccocontrol.org/e-cigarette/italy>, (접속일: 2017. 6. 8)

영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excise-duty-to-bacco-duty/excise-duty-tobacco-duty-rates>, (접속일: 2017. 6. 16)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ax-treatment-of-heated-tobacco-products/tax-treatment-of-heated-tobacco-products>, (접속일: 2017. 6. 8)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접속일: 2017. 5. 16)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shiraberu/zeiho-kaishaku/tsutatsu/kihon/tabako/03.htm>,
(접속일: 2017.5.16)

일본 담배산업주식회사,

<https://www.jti.co.jp/tobacco/products/others/index.html>, (접속일: 2017.5.16)

일본 담배산업주식회사,

https://www.jt.com/investors/results/fact_sheet/pdf/factsheets.fy2016.pdf, (접속일:
2017.6.14)

일본 재무부,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sumption/index.htm, (접속일: 2017.5.16)

일본 재무부,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sumption/129.htm, (접속일: 2017.5.25)

일본 재무부,

http://www.mof.go.jp/tax_policy/summary/consumption/127.htm, (접속일: 2017.6.5)

일본 참의원 회의록(2017년 4월 10일),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93/0015/19304100015004a.html>, (검색일: 2017. 10.11)

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stf/houdou/0000153190.html>, (접속일: 2017.5.2.)

증기담뱃세 홈페이지,

<http://vaporproductstax.com/wp-content/uploads/2016/10/Determining-excise-rate-for-e-cigarettes-in-Italy-VPT.pdf>, (접속일: 2017. 6. 8)

프랑스 법령정보, Code général des impôts §575,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jsessionid=ECC63359C8F49673BA3ACC46E2BC10FA.tpdila12v_3?idArticle=LEGIARTI000033713149&cidTexte=LEGITEXT000006069577&categorieLien=id&dateTexte=, (접속일: 2017.6.15.)

프랑스 법령정보사이트,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30199480&fastPos=2&fastReqId=1969213551&categorieLien=id&oldAction=rechTexte>, (접속일: 2017.6.8.)

프랑스 소비세관,

<http://www.douane.gouv.fr/articles/a10948-regime-fiscal-et-economique-des-tabacs>, (접속일: 2017.6.8)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excise-and-excise-equivalent-goods/tobacco-excise/>, (접속일 2017.6.7.)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Business/Excise-and-excise-equivalent-goods/Tobacco-excise/Excise-rates-for-tobacco/>, (접속일: 2017.6.8.)

호주담배협회,

<http://www.tobaccoaustralia.org.au/chapter-13-taxation/13-2-tobacco-taxes-in-australia>, (접속일 2017.6.2.)

호주담배협회,

<http://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3-taxation/13-3-the-price-of-tobacco-products-in-australia>, (접속일 2017.6.2)

호주담배협회,

<http://www.tobaccoinaustralia.org.au/chapter-12-tobacco-products/12-1-tobacco-in-australian-cigarettes>, (접속일 2017.6.2)

호주정부 제약기구,

http://www.nationaldrugstrategy.gov.au/internet/drugstrategy/publishing.nsf/Content/national_ts_2012_2018, (접속일 2017.6.2)

EU, Tabaco Products Directive 2014/40/EU,

https://ec.europa.eu/health/sites/health/files/tobacco/docs/dir_201440_en.pdf, (접속일: 2017.6.5)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http://www.who.int/fctc/text_download/en/, (접속일: 2017.6.5.)

WHO, <http://www.who.int/tobacco/economics/taxation/en/index1.html>, (접속일: 2017. 6. 16)

Kosis 홈페이지, 『담배소비세 담배급별 과세현황(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07_A721&conn_path=I3,
(접속일: 2017. 6. 21)

〈관련 참고 목록〉

일본 재무부, http://www.mof.go.jp/tax_policy/index.html, (접속일: 2017.5.11.)

OECD, Application of excise tax to e-cigarettes in Italy, Vapor Products Tax, pp.1~2.

<부 록>

1. 전자담배 종류

- 니코틴 액상형태의 전자담배, 연초 고품형 전자담배, 궤련형(가열식) 전자담배로 구분됨

구 분	니코틴 액상	연초 고품형물	궤련형(가열식)
니코틴 액상/ 연초 고품형물 /스틱	 <p>니코틴 액상과 향을 섞은 원팩</p>	 <p>연초 고품형물과 캡슐로 구성</p>	 <p>연초, 궤련지, 필터로 구성</p>
디바이스	 <p>니코틴 액상을 증기화하여 흡연</p>	 <p>흡연부 전자기기를 통해 흡연</p>	 <p>전자기기로 가열해 궤련스틱의 필터를 통해 흡연</p>

출처: KT&G, PM, 한국전자담배의 담배 설명출처 및 최성은(2015), p.3 재인용

